『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

2006. 9. 4.

(재)대한산업경제연구소

提　出　文

농림부장관　貴下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9. 4.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이 사 장　신　춘　식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 이 용 무

연 구 원 / 최 지 용

연 구 원 / 민 만 기

연 구 보 조 원 / 성 무 영

연 구 보 조 원 / 문 기 석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수행방법 ·····5

제 2 장 반려동물 관리 현황

제 1 절 반려동물 사육 및 판매 실태 ·····9

제 2 절 유기반려동물의 발생 및 관리 실태 ·····29

제 3 절 동물사체 처리 실태 ·····48

제 3 장 반려동물 관리법령 고찰

제 1 절 동물보호법 ·····55

제 2 절 동물 관련 법제 현황 ·····59

제 4 장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제도 고찰

제 1 절 반려동물 등록제 ·····65

제 2 절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70

제 3 절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현황 ·····79

제 4 절 반려동물 장례업자 등록제 ·····87

제 5 절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현황 ·····89

제 5 장 반려동물 관리방안

제 1 절 관리현황 및 관리방안 배경 ·····95

제 2 절 반려동물 관리방안 ·····95

1. 반려동물 등록제 ·····95

2. 판매업자 등록제 ·····101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107

4. 동물장례업 허가제 ·····114

5.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120

6.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121

제 6 장 반려동물 관리 표준 조례(안) ·····125

제 7 장 결 론 ·····135

부 록

부록 1. 참고문헌 ·····139

부록 2. 해외 관련법령 및 조례 ·····142

부록 3. 관련 단체 의견서 ·····209

표 목 차

〈표2-1〉 연도별 서울지역(일산, 분당포함)애견 보유현황 ·····12
〈표2-2〉 2004년도 전국 애견 및 고양이 사육두수 추산 ·····12
〈표2-3〉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
〈표2-4〉 2004년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현황 ·····18
〈표2-5〉 2006년 7월 현재 애견판매를 하는 애견센터 수 ·····19
〈표2-6〉 대표적인 판매 견종 및 판매 수 ·····25
〈표2-7〉 반려동물 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5
〈표2-8〉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30
〈표2-9〉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처리현황 ·····31
〈표2-10〉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47
〈표2-11〉 동물사체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표4-1〉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65
〈표4-2〉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66
〈표4-3〉 스위스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67
〈표4-4〉 독일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69
〈표4-5〉 일본의 동물보호소 관리에 따른 주체별 역할분담 ·····86
〈표5-1〉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96
〈표5-2〉 반려동물 등록제의 역할분담 ·····97
〈표5-3〉 동물의 등록방법 비교표 ·····97
〈표5-4〉 판매업자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102
〈표5-5〉 판매업자 등록제의 역할분담 ·····103
〈표5-6〉 동물 보호시설 국가별 운영현황 ·····108
〈표5-7〉 동물 보호시설 확충에 따른 역할분담 ·····108
〈표5-8〉 동물 보호시설의 요구면적 산출표 ·····110
〈표5-9〉 동물장례업 국가별 시행현황 ·····115
〈표5-10〉 동물장례업 허가제의 역할분담 ·····115

그 림 목 차

〈그림2-1〉 개 경매장 전경 ·····14
〈그림2-2〉 전국의 대표적 애견센터 밀집지역 ·····19
〈그림2-3〉 외국의 대형 애견샵 전경 ·····22
〈그림2-4〉 국내 애견센터 내·외부 전경 ·····23
〈그림2-5〉 국내 애견센터 진열장 전경 ·····23
〈그림2-6〉 국내 애견센터 내부 숙소 및 미용실 ·····23
〈그림2-7〉 개 회충 감염경로 ·····34
〈그림2-8〉 개 조충 감염경로 ·····34
〈그림2-9〉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Ⅰ) ·····37
〈그림2-10〉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Ⅱ) ·····39
〈그림2-11〉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Ⅲ) ·····40
〈그림2-12〉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Ⅳ) ·····42
〈그림2-13〉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Ⅴ) ·····44
〈그림2-14〉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Ⅵ) ·····46
〈그림2-15〉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Ⅰ) ·····49
〈그림2-16〉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Ⅰ)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수행방법

KIE
www.dict.or.kr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문화는 실질적인 생계유지에는 관련이 없지만 현대의 사회생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생활은 음악, 영화, 연극 등의 관전문화도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놀이, 레저, 취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에 본 연구의 주체가 되는 개의 위주로 형성된 반려동물문화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증대에 맞춰서 발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에는 현대의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거리로 생각했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1988년 해외관광자유화가 된 것이 애견문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인 핵가족,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현대생활이 각박해지자 가족을 대신할 대체수단으로 반려동물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려동물 문화는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시작되고, 2만 달러에는 꽃을 피우며, 3만 달러에는 완전한 휴머니즘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이 유럽과 일본, 미국의 예에서 잘 볼 수 있다.

미국은 2004년 매출규모가 340억 달러(약 36조원) 수준이고 중국도 애완견수만 1억5000만마리에 달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여 반려동물 중 애견산업 규모만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판매 가격이 대체로 정찰 제다.

미국 오마하스테이크는 개용 세트메뉴를 내놓았고 할리데이비슨은 개 전용 오토바이 슈트를 판매한다.

뉴질랜드에선 개를 분양할 때 분양 받을 사람이 책임지고 개를 키울 수 있는지 직접 방문해 경제적인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며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 검진까지 받도록 유도할 정도의 수준으로 반려동물은 대우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이던 IMF 직전인 1997년 10월경부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전체시장은 연간 3천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애완용 개의 수입도 1997년 1,255건에 1,863두에서 2002년 11,511건에

57,072 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그에 맞춰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5년 만에 전체국민의 10% 미만에서 18%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소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증가는 유기견의 증가로 이어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들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유통, 판매, 사육, 사체처리 등의 문제와 공공장소 출입논란과 대중교통 이용, 소음과 냄새 등의 환경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은 2004년 4만5000여마리에서 2005년 6만5000여마리로 늘어났지만 정작 제대로 된 애견문화 홍보책자 하나 제대로 없는 형편이다.

이상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발전, 개체수 증가, 문제점 확산들에 대하여 사육자, 판매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목적

국내 반려동물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재정립.

반려동물 사육자와 비사육자간의 대립 발생을 완화시키고, 발생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체를 위한 제도 정립.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번식장, 경매장, 판매소,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토대 마련.

유기동물의 발생과 환경, 소음, 사체 처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업주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사육주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전체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수행방법

1. 연구의 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반려동물 사육 및 관리현황 조사

② 반려동물 판매업체 현황 조사

③ 동물장례업체 현황 조사

④ 유기동물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⑤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리 실태 조사

나. 선진국의 반려동물 관리 사례조사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체계 조사

②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 사례 조사

③ 판매업체 등록제도 시행 사례 조사

④ 동물장례업체 등록제도 시행 사례 조사

⑤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 체계 조사

다. 반려동물 관리방안 제시

①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방안 제시

② 판매업체 등록제도 시행방안 제시

③ 동물장례업체 등록제도 시행방안 제시

④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방안 제시

⑤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제시

2.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먼저 현재의 반려동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분석하고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의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반려동물 등록방안, 판매업체 및 동물장례업체의 등록방안,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끝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반려동물 관리 현황

제 1 절 반려동물 사육 및 판매 실태

제 2 절 유기반려동물의 발생 및 관리 실태

제 3 절 동물사체 처리 실태

KIE
www.dict.or.kr

제 1 절 반려동물 사육 및 판매 실태

1. 반려동물의 정의와 범위

반려동물은(Companian animal)은 이전의 애완동물(Pet)의 사랑스러운 장난감이라는 개념에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의 동물로 정의한다.

고도의 현대화 전문화,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인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할 대체가족으로 개와 고양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일이다.

가. 반려동물의 발달사

인류의 역사에서 반려동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과 개과의 동물이 처음 만난 시기인 신석기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인간이 늑대 등 개과의 새끼를 가져다 키웠던 것이 개와 인간의 시작이었을 것이며 이후 인간은 키워지는 개의 먹이를 공급해주고, 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인간의 청각과 후각, 야간시각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냥시 사회성을 지닌 동물로서 인간의 사냥을 도왔고 쓰레기를 치워주었으며, 발달한 청각과 후각으로 사나운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우리에게서 그들은 안식을 찾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인간과 완벽한 친화와 믿음을 구축한 개들은 사냥, 경계, 경호, 사역 등 목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보다 인간의 친구로서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으로 고립화 되는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조직을 형성할 파트너가 필요하게 된다.

회사에서의 조직을 벗어나 가정으로 복귀한 현대인에게 가족은 바로 구성원이며 조직인 셈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전문화되어 예전의 대가족 제도가 주었던 사회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게 된 현대인들은 가족애와 조직을 대신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바로 이들 반려동물들이다.

독신으로 생활하지 않고 충분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도 분업화 전문화된 현대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므로 휴식시간을 같이 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를 간

절하게 바라게 되었고 나의 주관적인 휴식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어느 정도는 사회성을 갖춘 동물이며 이들은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놀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주인이 밝히기 어려운 비밀도 철저하게 지켜주는 비밀엄수성도 같이 지니고 있다.

누군가에게 털어 놓고 싶은 비밀이라든지 자신의 치부를 개에게는 보여줄 수 있으며 마음의 위안을 개에게서 받고 싶게 되어 개라는 동물에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기 힘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약간의 책임감과 관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EU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개의 재롱을 보면서 좋지 않은 스트레스(DI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주인의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재력의 정도, 외모에 관계없이 따르고 믿는 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요즘은 딩크족으로 불리우는 자식을 갖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친근함을 이용한 치료동물, 장애보조동물로서도 이용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인생의 동반자적 역할로서 앞으로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나.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의 발달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애완동물(Pet)으로 불리웠던 대다수의 종류인 개, 고양이의 포유류를 포함하여 햄스터, 프레디도그, 기니피그 등의 설치류, 관상조류, 드물지만 파충류, 어류, 곤충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지만 인간과 함께 감정적 교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물로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일 것이다.

이들은 불과 100년 전만해도 고기와 가죽을 얻는 가축이었다. 이후 개와 고양이의 가치는 물질적보다 정서적인 면을 인정받아 애완동물이 되었으며, 이후 Pet의 개념에 휴머니즘이 가미된 반려동물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목적견이나 보조견, 치유동물로서 도움을 주는 원숭이, 돌고래 등 일반 포유류의 동물이기 이전에 형제자매가 없는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춘기의 학생의 천진난만한 동생으로서, 단촐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외로운 노후의 독거노인과 함께 산책하고, 임종시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반려동물은 아무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인간에게 선물하는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의 전단계로 불리웠던 애완동물(Pet)은 집에서 키우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완동물(愛玩動物)의 뜻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이듯이 사육주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모두가 그 범위에 해당한다.

사육주만 귀엽다면 뱀, 이구아나, 도마뱀 등 파충류/ 개구리 등의 양서류/ 타란툴라(애완용 독거미), 귀뚜라미, 사슴벌레 등의 곤충/ 손노리개 조류를 포함한 앵무, 잉꼬 등 조류/ 각종 담수어와 열대어까지 참으로 다양하며 드물게는 포니(미니어쳐 홀스)와 멧돼지, 악어 들도 애완동물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애완동물중에서 개와 고양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감정을 사육주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기능가 함께 정신장애치유동물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는 장애인보조견(맹인안내견, 청각장애인보조견)과 각종 목적인 폭발물탐지견, 인명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의 목적견으로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보다 객관적인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인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이며, 그러한 동물을 반려동물의 범위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한다.

2. 축종별 사육현황 및 향후 사육전망

본 보고서에서 반려동물로 범위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이며, 이 두 축종의 사육현황과 분포, 증가수를 인구별, 대도시별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향후 증가추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1〉 연도별 서울지역(일산, 분당포함) 애견 보유현황

연도	보유가정수	보유율	증가율
2001	293,506	8.80%	
2002	404,495	11.4%	37.8%
2003	469,985	15.1%	40.9%
2004	683,825	16.6%	20.0%

자료출처 : 제로니 리서치 (2001~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자료(2004)

〈표2-2〉 2004년도 전국 애견 및 고양이 사육두수 추산

구 분	평균보유율	보유가구	평균보유두수	추산두수
개	10.0%	1,553,874	1.3	2,020,036
고양이	0.5%	77,694	1.0	77.694

통계청 2004년 전국 가구 추계수자 : 15,538,741가구

위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통계청 2004년 전국가구추계수자 대비 10%의 개사육두수를 계산하여 2004년 현재 200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과 신문, TV 등의 발표에 의하면 15% 이상의 국민들이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국가구수의 15% 의 가정에서 평균 1.3 마리의 개를 사육한다면 2004년 현재 3,030,054 마리의 개가 사육되는 것으로 업계의 주장과 비슷한 형태의 수치가 나타난다.

3.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리현황

현재 반려동물을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전부이다.

이법에도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은 없으며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을 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는 현행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 전부이며, 이 조례 또한 유기동물이 발생한 후에 포획, 관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2-3〉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 분	문제점	해결방안
정부	현재 사육되고 있는 반려동물만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동물 사육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육되는 동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자치단체	반려동물만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사육동물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동물유기 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육자	* 사육동물에 대한 사육지식의 부재 * 유기동물의 발생 *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비사육자와의 마찰 * 공동생활에서의 위협	

4. 축종별 판매현황

가. 판매동물의 관리

판매동물의 관리는 개가 동물보호법에 동물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농림부가 주무부서가 된다.

농림부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8.8]

①.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②.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는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을 의미하는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종류의 축종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개념보다는

부산물을 얻는 가축인 소, 돼지, 닭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법에 유기동물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공고해야 한다. 연구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치료, 규모에 대한 기본적 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며 제7조 ③항에서는 다른 법인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실정상 동물의 보호와 관리와 등록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판매를 위한 개의 건강, 위생, 친화, 운동,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사육자와 판매소인 애견센터는 등록이 없이도 매매와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판매동물의 유통시스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유통시스템은 경매장을 통한 애견센터에서의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 가정집에서의 개인판매, 번식장에서 직거래 판매 등이 있다.
이러한 유통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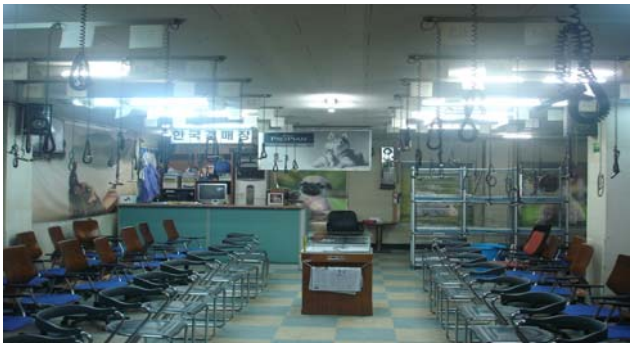

〈그림2-1〉 개 경매장 전경

개 경매장의 모습으로 천정에서 늘어진 개인별 번호스위치로 경매의사를 표시한다.

① 번식장 →경매장 →애견센터 →소비자

가장 대표적인 유통시스템으로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경매장은 14곳으로 지역별 위치와 월 평균 거래 자견수는 다음과 같으며 도별로 강원도와 제주도는 경매장이 없는 상황이다.

㉠ 서울

경매장명	소재지	월평균 거래자견수
한국애견경매장	퇴계로 소재	1,500 마리
서울애견경매장	퇴계로 소재	1,200 마리
서부애견경매장	김포공항 소재	1,300 마리
경서애견경매장	수색 소재	1,500 마리

㉡ 경기. 인천

경매장명	소재지	월평균 거래자견수
인천애견경매장	인천 소재	500 마리
팔당애견경매장	경기도 팔당 소재	2,000 마리
한국애견경매장	경기도 퇴계원 소재	1,500 마리
광주애견경매장	경기도 광주 소재	1,200 마리

㉢ 대전. 충청권

경매장명	소재지	월평균 거래자견수
한국애견경매장	대전 은행동 소재	1,000 마리
동양경매장	대전 은행동 소재	480 마리
전국경매장	대전 판암동 소재	500 마리

㉣ 광주. 전라권

경매장명	소재지	월평균 거래자견수
광주애견경매장	광주 백운동 소재	450 마리

㉤ 대구. 부산. 경상권

경매장명	소재지	월평균 거래자견수
대구애완견경매장	남문시장 소재	700 마리
부산전국경매장	범일동 소재	1,200 마리

현재 애견센터의 경매장 의존도는 80% 이상이며, 나머지 20%는 직접 번식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번식장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중 80%를 차지하는 경매를 통해 구매한 강아지는 실질적 사육주에게 판매되기전 또는 [애완동물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명시한 15일 안에 폐사하는 확률은 50%에 달한다.
따라서 위의 경매장 월간 15,030여두, 연간 판매자견수는 180,360여두이다.
이 자견들이 경매를 통하여 애견센터로 공급되며, 이렇게 공급된 80%와 애견센터 자체적으로 번식 또는 구입한 나머지 20%를 합한다면 총 22,5450 마리가 센터로 공급되며 이중 센터에서 폐사한 50%의 자견을 제외한 112,725 두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유통과정중에 애견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므로 전체 거래자견수는 375,750 두가 되며, 애견센터 판매 30%인 자견수를 제외한 나머지 70% 263,025두가 애견센터를 제외한 기타거래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전국적인 강아지 거래두수는 현재 연간 37만 마리로 파악된다.

② 인터넷 →소비자
인터넷을 통한 대부분의 판매자는 개인가정집과 전문번식장이며, 간혹 인터넷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자가 애견센터와 소비자를 연결하기도 한다.
인터넷 판매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전체 판매견중에 20%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가정집 판매: 일반 가정에서 1년 이전에 구입한 암컷을 번식시켜서 (개는 생후 2개월경에 분양이 되며, 교배가 가능한 나이는 조숙한 경우 생후 6개월, 보편적으로 생후 12개월이며, 바람직한 교배는 소형견은 암수, 12개월 이상, 대형견은 18개월 이상이다) 강아지를 얻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개와 관련된 카페, 블로그, 사이 등에 분양정보를 올려서 소비자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
현재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은 번식장에서는 많은 질병으로 자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가정집에서 한 마리의 암컷이 번식한 자

견들은 사랑과 지극한 정성의 관리를 받음으로 인하여 건강한 개체가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그 거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가정집에서 판매되는 판매견은 소형견종으로는 시츄,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미니어쳐 슈나우져,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이 대부분이며, 중형견은 진돗개, 대형견은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던 시베리언 허스키, 알라스칸 말라뮤트,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등이다.

㉡ 전문번식장은(Kennel) 견종중에 한종 또는 두종류만 전문적으로 번식하는 곳으로서 가격이 대부분 고가이다.

보편적인 생후 2개월령의 자견이 평균 30만원에 거래가 된다면 전문 번식장의 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애견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부모견을 둔 강아지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에 거래가 된다.

이렇게 고가의 강아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좋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구입하는 경우와 자신도 번식을 통해서 부업을 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신이 300만원에 자견을 구입하고, 1년 이후에 번식을 해서 자견을 4두 또는 8두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고가의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실질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③ 아는사람 →소비자

전국 강아지 전체 거래량에 4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거의 무료 또는 저렴한 선인 20만원 미만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아는사람의 기준은 구입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친척과 거래처, 이웃주민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친구, 사제지간, 연인관계에서의 선물로도 거래가 된다.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큰 형태이지만 폐해도 많다.

선물의 경우는 받을 사람이 개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전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개가 다산견(한번 출산에 7 ~ 8두 이상의 많은 자견을 생산하는 종류)일 경우 모두 키우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고 강아지를 판매 또는 선물로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웃주민들은 어릴적 귀여운 강아지를 자주 보게 되고, 귀여운 모습에 충동적으로 받게 되서 키우다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개의 습성이나 상황들이 발생하여 유기동물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다. 판매처 현황

반려동물의 판매처는 번식장, 애견센터, 동물병원, 가정집, 인터넷 판매처 등 이며, 이중 가장 많은 거래가 애견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가정집, 그리고 번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애견센터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표2-4>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은 2004년 현재 총 3,520 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개폐업을 연속하므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며, 본 연구과정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표2-5>와 같이 현재 애견센터의 개수가 파악되었다.

〈표2-4〉 2004년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현황

지 역	업체수	지 역	업체수
서울	700	강원	123
부산	323	충청북도	109
대구	221	충청남도	130
인천	279	전라북도	108
광주	100	전라남도	88
대전	135	경상북도	151
울산	74	경상남도	170
경기	774	제주도	35

자료출처 : 통계청

<표2-5> 2006년 7월 현재 애견판매를 하는 애견센터 수

서울	400 곳	**경기도**	500 곳
인천	100 곳	**충청남북도**	100 곳
대전	50 곳	**전라남북도**	80 곳
광주	50 곳	**경상남북도**	200 곳
대구	95 곳	**강원도**	90 곳
울산	45 곳	**제주도**	15 곳
부산	200 곳	총: 1,925	

조사: 개관련 유통회사 굿데이(Gooday) 전국판매망을 통한 실질적 자료조사

㉠ 대표적 애견센터 밀집지역 방문

모든 애견센터에서 강아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동네마다 있는 애견센터보다는 대도시에 위치한 애견센터 밀집지역에서의 강아지 분양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애견센터 밀집지역인 서울의 퇴계로, 부산의 남포동, 대구 반월당, 대전 은행동 등이며 밀집지역에 위치한 애견센터와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2-2> 전국의 대표적 애견센터 밀집지역

서울: 퇴계로 일대 30 여 곳

퇴계로 4가 일대

퇴계로 5가 일대

대전: 은행동 일대 15 여 곳

대전역 방향

대전역 반대 방향

광주: 광주천변(사동, 호남동) 일대 10 여 곳

울산: 성남동 일대 20 여 곳

대구: 반월당 일대 10 여 곳

조류상회와 애견센터

애견센터 밀집지역

부산: 양정 일대 20 여 곳:

남포동, 광복동 일대 애견센터 밀집지역

수영구 일대 20 여 곳

수영구 일대 애견센터

㉡ 판매현황

현재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견종은 800 여 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에 전세계적인 애견단체연합체인 FCI 에 등록된 견종수는 380 종이다.

이중 국내에 반입이 된 견종은 200 종류 정도이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견종은 100 여종,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견종은 30견종 정도이다.

- 대표적인 소형견(몸무게 10kg 이하)-

시츄,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토이 푸들, 미니어쳐 슈나우져,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 미니어쳐 핀셔, 치와와, 닥스훈트, 파삐용, 보스톤 테리어, 비숑 프리제 등

- 대표적인 중형견(몸무게 10kg 이상 ~ 25kg 이하)-

셔틀랜드 쉽독, 진돗개, 벨지언 말리노이즈, 불독, 사모예드, 보더콜리, 시베리언 허스키, 올드 잉글리쉬 쉽독 등

- 대표적인 대형견(몸무게 30kg 이상)-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져먼 셰퍼드 독, 도사, 도베르만 핀셔, 로트 와일러, 그레이트 피레니즈, 그레이트 데인, 알라스칸 말라뮤트, 세인트 버어너드 등

위 대표적인 판매 30여 견종중 시츄,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토이 푸들, 미니어쳐 슈나우져, 미니어쳐 핀셔,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 골든 리트리버, 시베리언 허스키, 진돗개 10종류가 전체 판매종류 중에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를 국내 반입 견종인 기타 90종류가 차지하고 있다.

암수별: 암컷과 수컷의 비율은 60:40으로 암컷이 약간 더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거의 모든 애견센터에서는 생후 60일 전후인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후 40일에서 50일령의 강아지가 판매되고 있다.
이유는 보통 강아지가 많이 폐사하는 시기가 모유를 끊는 생후 50일 이후이며, 이전에 강아지를 출하시키려는 번식장과 강아지가 젖살이 올라서 제일 귀여운 시기가 생후 30일에서 50일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때의 강아지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보통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보의 영향으로 생후 60일 이상은 되어야만 튼튼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후 60일이 되면 어떤 외형의 변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판매소에서 말하는 데로 믿고 구입하는 실정이다.

㉡ 애견센터 시설현황

<그림2-3> 외국의 대형 애견샵 전경

보통의 애견센터 시설은 크게 용품진열과 강아지 판매를 위한 시설, 미용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어 진다.
용품진열은 사료, 간식, 옷, 줄, 개집, 위생용품 등이 차지하며, 요사이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2-4> 국내 애견센터 내·외부 전경

강아지 판매를 위한 시설로는 유리안쪽에 강아지가 잘 보이도록 판매대(쇼케이스)를 만들어서 강아지가 노는 것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 시설에는 어린 강아지를 위한 난방을 설치한 곳도 있으며, 손 쉽게 만질 수 없도록 유리를 높여 만들었다.

<그림2-5> 국내 애견센터 진열장 전경

밤에는 판매소의 면적이 좁은 경우는 그대로 재우지만, 넓은 경우는 따로 숙소를 장만하여 재운다.

미용시설은 넓은 판매소의 경우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미용을 하지만, 좁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미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2-6> 국내 애견센터 내부 숙소 및 미용실

모든 애견센터는 용품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미용을 병행한다.

또한 모든 애견센터 중에 60% 만이 강아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애견센터의 주수입원은 용품판매와 미용이라고 볼 수 있다.

㉢ 예방접종 실시 여부

현재 수의학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은 구충을 한 후 실시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DHPPL을 3회 접종한다. 최초 접종은 생후 6주경에 시작해서 3차는 생후 12주가 지난 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이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과 겨울철 또는 환절기가 겹칠 때는 개 감기인 켄넬코프도 접종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는 구입자는 구입할 동물의 월령과 예방접종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인터넷

웹 사이트 및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개별 사이트만 300곳이 넘으며, 이외에 블로그, 카페, 사이 등 개인 홈페이지까지 포함하면 1,000곳을 상회한다.

라. 판매동물의 종류와 두수

농림부에서 조사한 가축사육현황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개의 경우 26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시정연구원의 시정연 2004-R-21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전체 시민의 16.6%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에서의 애견사육현황이 다소 적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전체의 15%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전체 가구 수 1,530만 가구 중 15%인 233만 가구에서 개를 키우며, 평균 두수 1.3 마리를 대입하면 300만 두가 사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후 1년 이상 된 개의 평균연령 10년을 감안할 때 매년 30만 마리의 개가 사망하고, 이렇게 사망한 빈자리를 자견이 채우기 때문에 평균 판매두수는 연간 30만 마리이며, 고양이는 개의 5%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1만5,000 마리가 판매된다.

이렇게 판매되는 35만 마리의 개 중 70%는 소형견, 나머지 30%는 중대형견이며 판매되는 전체의 90%인 27만 마리가 대표적 10견종으로서 대표적인 견종과 판매 마리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2-6〉 대표적인 판매 견종 및 판매 수

소형 견종	판매 수	중형 견종	판매 수
말티즈 시츄 푸들 요크셔 테리어 미니어쳐슈나우져	전체 판매 마릿수의 70%인 21만 마리	아메리칸코커스파니엘 진돗개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시베리언 허스키	전체 판매 마릿수의 30%인 9만 마리
- 전체 판매 마릿수의 90%인 27만 마리를 기준한 것임			

위 자료와는 별도로 현재 발생되는 유기견 중에 순종은 위의 10견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2-7〉 반려동물 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 분	문제점	해결방안
정부	반려동물 판매업소만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며, 현재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판매업소의 시설 및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업소를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자치단체	관할지역의 판매업소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나 판매업소의 관리 근거법이 없다	
판매업자	* 어리거나 약한 동물의 판매로 인한 질병 및 폐사 발생 * 판매업소마다 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 사육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몽 불충분 * 판매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5.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반려동물은 명칭처럼 우리와 인생을 같이 살아갈 동물로서 그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단순한 친구의 역할보다 또 하나의 가족의 개념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반려동물에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발생하여 공동주택,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 반려동물의 분실 및 보호 신고(조속한 업데이트, 일원화)

개 및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의견은 누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겠는가? 다만 분실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

이부분에서 일단은 의도적인 반려동물의 유기를 제외하고, 사육주의 부주의 또는 반려동물의 일시적인 가출로 분실한 경우만 가정한다면 현재의 반려동물 분실과 보호의 신고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각종 통계치의 조사결과 서울에는 애견센터와 동물병원이 모두 합쳐서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거의 모든 점포의 유리창에는 분실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전단지가 많게는 5장, 보통 2~3장 정도는 붙어 있다.

이렇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찾겠다는 전단지에는 찾으면 후사하겠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보통 주인들이 주장하는 분실동물은 한달에 서울에서만 몇 마리가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도 짐작이 된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월 1,400 마리 이상 발생되어 보호중인 유기동물 중에 대부분이 분실동물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유기동물 포획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 동물의 털이 자라나 자신의 개인지 확인이 쉽지 않으며, 그리고 공고가 각 지자체를 통하므로 모든 지자체를 검색해야 하는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기동물보호를 한다면 유기동물의 인수(주인에게 돌려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

현재 반려동물중 50%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키워지고 있으며, 이외에 50%도 대부분이 지방 대도시에서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키워지는 대도시의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므로 키워지는 반려동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키워지고 있다.

요사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층간 소음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인데 반려동물 중 개의 짖음이

이러한 층간소음의 중심에 서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관리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부가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이웃간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짖음에 의한 소음문제, 반려동물의 체취 문제, 털의 날림,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혐오성 주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 공공장소 출입

현재의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여행이나 산책을 즐겨하고 있다.

여행시 휴게소, 호텔,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와 사찰, 고궁에까지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슈퍼마켓, 음식점, 정육점을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모습과 약수터나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이 있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의 출입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사나운 동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며, 이 외에도 반려동물의 빠지는 털을 경계해야 할 정육점과 슈퍼마켓 등을 자신의 반려동물과 버젓이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출입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라. 대중교통 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젊은 독신의 경우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친구집에 방문을 가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반려동물에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기타 타인들에 의하여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지하철은 맹인안내견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반려동물의 승차를 규제하고 있으며, 버스나 택시의 경우는 운전자의 재량에 의하여 혐오스럽지 않은 동물에 한하여 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소형반려동물은 운전자가 없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얼마저 언론상에 뜨겁게 문제를 제기했던 일명 “개똥

녀사건”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 환경오염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살아있으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후에 발생한다.

살아있으면서 발생하는 오염은 배설물과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 그리고 털의 날림현상이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배설물과 악취관리가 되고 있지만 일부 집단사육장(번식장,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악취는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반려동물관리 시스템만으로는 대형 번식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으며, 추후 집단사육시설에 대한 오폐수 시설기준이 절실히 요구된다.

반려동물의 사후 환경오염은 사체의 불법매장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키워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평균연령을 계산한다면 연간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이 사망한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환산하면 대략 2,000톤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사망한 2,000톤의 반려동물 대부분은 지금도 불법 매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바. 비사육자의 인식부족과 편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비사육자들과 충돌이 생기는 것의 대부분은 편견에 의한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로 발생되는 충돌은 공동주택에서의 짖음에 의한 소음이지만 의외로 피해없는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개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하나로 욕이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예가 빈번한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육자들의 행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비사육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 교육은 사육자와 비사육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교육자료도 사육자용, 판매자용, 비사육자용의 세가지가 되어야만 이상적인 교육이 실현된다고 보여진다.

제 2 절 유기반려동물의 발생 및 관리 실태

1. 유기반려동물의 발생현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포획된 유기동물의 수는 2004년 45,003두에서 2005년 65,533두(표2-8참조)로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육추정두수의 약 3%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며, 향후에도 유기동물의 발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포획된 유기동물 중 약 50% 이상이 재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표2-9참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기반려동물의 발생원인은 사육자들의 충분하지 못한 사육지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바로 이듬해부터이며, 이 당시는 국민들의 카드사용이 자유롭고, 재산과 직업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카드가입이 자유로운 시기여서 선물로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반려동물의 판매가 급증했으며, 귀여운 반려동물을 외모만 보고 충분한 준비없이 받아들인 사육주들은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짖음, 털 날림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반려동물의 발생은 전적으로 사육자들의 잘못된 사육지식과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2-8〉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종류별 / 시도	계	개	고양이	기타
서울	17,577	14,679	2,822	76
부산	3,785	3,633	148	4
대구	2,766	2,396	353	17
인천	4,666	4,417	249	0
광주	1,566	1,441	125	0
대전	987	954	30	3
울산	2,275	2,105	170	0
경기	22,018	15,201	6,817	0
강원	1,760	1,596	164	0
충북	1,252	1,185	64	3
충남	691	647	36	8
전북	533	515	10	8
전남	983	946	37	0
경북	1,580	1,456	124	0
경남	2,287	2,157	130	0
제주	807	780	20	7
총계 (%)	**65,533 (100%)**	**54,108 (82.6%)**	**11,299 (17.2%)**	**126 (0.2%)**

자료출처 : 농림부

〈표2-9〉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처리현황

종류별 / 시도	계	인도	입양	안락사	기타 (기증 등)
서울	17,577	618	684	9,837	6,438
부산	3,785	147	618	828	2,192
대구	2,766	87	132	1,239	1,308
인천	4,666	95	782	3,410	379
광주	1,584	88	559	475	462
대전	987	27	528	221	211
울산	2,275	71	812	503	889
경기	22,018	383	3,135	13,339	5,161
강원	500	28	130	319	23
충북	1,252	42	158	840	212
충남	694	35	256	256	147
전북	532	24	397	26	85
전남	989	100	159	369	361
경북	1,580	60	709	505	306
경남	2,264	76	817	768	603
제주	807	79	115	44	569
총계 (%)	**64,276 (100%)**	**1,960 (3.1%)**	**9,991 (15.5%)**	**32,979 (51.3%)**	**19,346 (30.1%)**

자료출처 : 농림부

2. 유기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점

유기된 반려동물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발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정서적인 문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정신적인 면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에게서 받고 싶은 보상심리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게 되며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나 형제로서 반려동물을 선물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자란 나눔, 책임감, 사랑을 반려동물을 통하여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육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어려서부터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저조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듯 인간과 가까운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끼리의 관계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모두 무책임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직접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반려동물의 유기는 우리 모두의 정서상 해로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 문제

현행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 및 주변시설에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게 되며,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 주택가 및 보도를 수시로 통행하는 반려동물 동반인들과 반려동물은 보도와 골목,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만 지내던 반려동물이 급작스럽게 도로에 나오게 된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집밖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유기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로 등을 횡단하는 일이 빈번해지며,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에는 교통사고로 많은 유기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 질병발생 문제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은 광견병, 파보바이러스와 기생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다.

이중에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은 광견병 등이 있는데 광견병은 개를 비롯한 개과의 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발생되며, 뇌에 퍼지게 되면 100%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광견병의 발생이 개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없지만 야생동물인 너구리로 인해서는 아직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동물이 발생된 경우, 주택가에서 위기를 느낀 유기동물은 가까운 야산에서 생활하게 되며, 이때 너구리 등과 접촉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광견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이렇게 광견병에 걸린 개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유기동물인지 전혀 모르고 접촉을 시도하게 되고, 광견병에 걸려 사납게 된 개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555곳의 모래 검사에서 16곳의 놀이터에서 개회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KBS 환경스페셜 2004년 2월 4일 방송자료에 의하여 개회충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에게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감염된 어린이는 시력장애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는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고 방영된바 있다.

문제가 되는 개회충은 가정에서 키워지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기 때문에 없지만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에게서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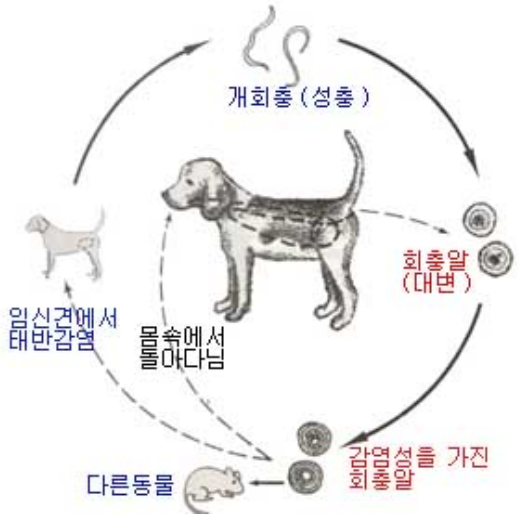

〈그림2-7〉 개회충 감염경로

〈그림2-8〉 개 조충 감염경로

라. 환경파괴와 오염 문제

유기된 반려동물은 생존을 위하여 먹이를 구해야 하며, 그중 가장 손쉬운 먹이가 쓰레기봉투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유기반려동물의 발생종류중에 95% 이상을 차지하며 개와 고양이는 밤새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골목을 지저분하게 하고, 음식냄새를 동네에 퍼지게 하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파헤쳐진 쓰레기가 빗물관을 타고 정화되지 않는채 하천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양이는 쓰레기를 뒤지는 일 외에도 야산으로 들어가서 천적이 없는 다람쥐, 청설모, 설치류, 조류 등을 닥치는데로 잡아먹어 야생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3. 유기동물 관리현황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처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년 상당한 비용이 동물보호소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다음은 본 연구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유기동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관리현황

①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예산: 9억 6천만원

자치구와 서울시의 비율= 50% : 50%

현재 시 차원에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없으며, 각 구청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대부분 임.

업무 담당자는 상당히 진보된 선진국 형태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반려동물등록에 관하여 의무적인 등록의 필요성을 말함.

② 대구광역시

예산 : 2005년→1억6천5백23만2천원

2006년→2억160만원

사용내역 : 포획 및 보호비 이외에 없음.

업무담당자는 등록제를 시행하면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을 한 반려동물에 대한 혜택이 지원되어야 한다고(ex : 백신지원→광견병~DHPPL 등) 생각하고 있었음.

등록을 위한 서버운영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한 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한편 애완동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하며,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 포획 및 관리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함.

③ 부산광역시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이 없음.(자치구별로 별도 관리됨)

각 구청별로 유기동물은 정황에 따라 병원, 농장, 유기보호소에 맡김(각 구별로 위탁비용이 상이함)

1두당 포획 및 관리비는 평균 9만원 선

④ 광주광역시

올해 광주시 수의사회 주관으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동물보호소의 홍보 및 유기동물 발생방지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양이는 해당 구청별로 공무원이 포획하러 다니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거의 포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⑤ 대전시 대덕구청

각 구별로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야 하며, 고양이에 대한 관리도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중앙정부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지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함.

나. 보호소의 유기동물 관리현황

국내 유기동물보호소는 이전의 지역마다 위촉한 공수의사를 통하여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9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기동물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보호시설과 계약을 맺게 되었다.

유기동물보호시설의 규모면에서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월 300두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대형시설과, 번식장 수준의 집단 사육이 가능한 중간형태의 시설, 그리고 이전 공수의사제도를 이용한 수준인 동물병원의 시설형태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기동물보호소가 맺은 계약에서 월 발생유기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시설규모의 차이를 보이는데 시설을 대형으로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기동물관리비용 9만원 기준으로 최소한 월 300 두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해야 하고, 중간 크기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두, 50두 이하가 발생될 때는 동물병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①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와 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초기에는 야생동물(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을 구조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장소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현재는 유기동물보호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시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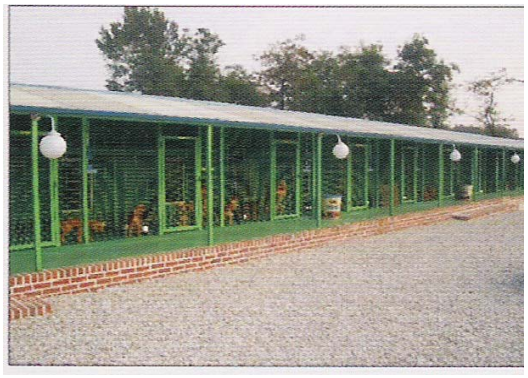

계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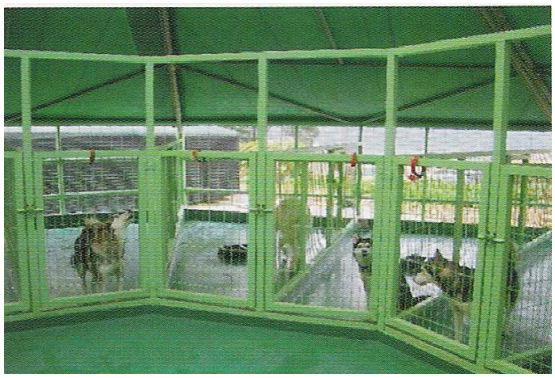

계류장

신입실(검역실)

진료실

포획차량내부

〈그림2-9〉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Ⅰ)

시설현황	대지 : 3200평 구조차량 7대 건평수 : 500평 오폐수시설 : 정화조 A동 : 소형견 계류장 전체 1800두까지 계류가능 B동 : 중형견 계류장 적정은 1600두 C동 : 대형견 계류장 현재 1000~1200두 정도 계류중 D동 : 입양대기실 병원 : 진료실, 신입신고실, 입원실 사무실 : 1층→사무실, 휴게실 2층→식당, 숙소
인력현황	사무직 : 4인, 동물관리 : 5인 구조직 : 7인, 계류직 : 9인 수의직 : 2인, 기타임원 : 3인
구조현황	한달에 1200두 정도 구조되어옴 개80%, 고양이15%, 기타5% 기타(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암수별 50:50비율로 거의 비슷함.
평균보호일수	30일(유기동물) 야생동물은 방사(방사불가능야생동물 : 원숭이, 파충류)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5% 입양 : 5% 안락사 : 90% 기타 : 군견 및 보조견으로 가끔 입양됨
예방접종주기	수의학적 진료 필요시에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1마리당 9만원의 지원비가 나옴 안락사후 유기동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처리비용은 1톤당 단가에 의해 계산된다. 지정폐기물 : 1kg당 4~5천원 후원금 및 위탁금 형식으로 운영됨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1달에 한번 회충약복용
기타	현실적 필요비용은 월 1,000두 이상 구조시 최저 12~13만원 정도가 적정함

② 경기도 소재 위탁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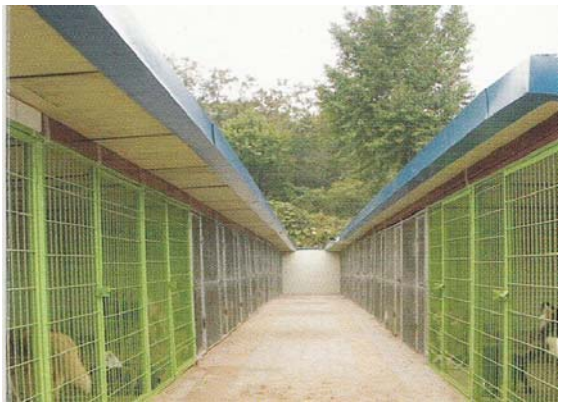

〈그림2-10〉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Ⅱ)

시설현황	대지 : 800평 건평수 : 300평 1보호소 : 계류장(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진료실 2보호소 : 계류장(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진료실 전체 300두정도 보호가능
인력	6명
구조현황	한달에 200두 정도 구조되어옴: 개97%, 기타3% 기타 : 97%가 고양이이고 나머지는 조류 및 파충류 소형견이 50%, 중형견이 30%, 대형견이 20%
평균보호일수	30~40일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5% 입양 : 5% 안락사 : 90% 기타
예방접종주기	최초수용시 한번 접종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1마리당 15만원이 지원됨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파상풍, 광견병 등 필요시 예방접종이 실시됨
기타	20만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함

③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에 위치하며 대구광역시 7개 구와 계약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는 협회를 시작할 당시 주택단지가 형성되기 전이었지만 현재는 주택가 한가운데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형편이다.

보호시설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가정집과 대로변 5층 건물의 옥상과 4층을 이용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시설과의 차이는 개:고양이의 비율에서 고양이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새로운 보호시설은 현재 충북 보은에 8,700평 중 개발된 1,700평 부지를 매입하여 건설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신설된 보호시설로 이전할 계획임.

보호소 전경

동물입양서약서

소형동물 계류장

대형동물 계류장

〈그림2-11〉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Ⅲ)

시설현황	대지 : 150평 건평 : 160평 포획차량 2대 적정보유두수 : 400두
인력현황	구조 : 4명 관리 : 4명
구조현황	2005년 : 2100마리 개 : 60%, 고양이 : 40%
평균보호일수	법정기준은30일이나 유기동물에 따라 다름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10% 입양 : 10% 안락사 : 80%
예방접종주기	상태 양호한 유기동물만 진료 및 예방접종 (1년에 1회)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포획비 : 7만3천원 보호비 : 10㎏미만은 3만원, 10~20㎏은 4만원, 20㎏이상은 5만원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없음
기타	유기동물에 대한 교육이필요함. 유기보호소를 늘리기 보단 유기동물을 억제시켜야 함.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필히 불임 수술이 필요

④ 광주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올해 광주시 수의사회 주관으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동물보호소의 홍보 및 유기동물 발생방지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양이의 경우는 해당 자치구에서 직접 포획에 나서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거의 포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외 보호시설

실내보호시설

동물사체 보관장소

동물구조차량 내부

〈그림2-12〉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Ⅳ)

시설현황	대지 : 330㎡ 건평 : 165㎡ 포획차량 1대 적정보유두수 : 140두 현재보유두수 : 133두
인력현황	총 인원 : 6명 (간사 1명, 운전기사 1명, 공공근로4명(노무2명, 미용사2명))
구조현황	유기동물 : 1,566두 (2005년 기준) 고양이는 포획을 못하고 있음.
평균보호일수	30일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5% 입양 : 37% 안락사 : 29.4% 자연사 : 28.6%
예방접종주기	들어오자마자 심장사상충만시킴(분양인이 원하면 종합백신 접종)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1두당 7만원정도 지원됨.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없음
기타	유기동물에 대한 교육이필요함. 1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정 보호시설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위치는 대덕구에서 30분 거리인 충북 청원군 현동면 선동리에 위치하며 대덕구 공수의사가 시설을 설치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시설은 공수의사 개인소유인 축사(소)옆에 칸을 막고, 진료실과 사무실을 갖춰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축사를 위한 방역이 철저하여 규모가 작지만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외계류장

실내계류장

진료시설

〈그림2-13〉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Ⅴ)

시설현황	건평 : 50평 포획차량 1대 적정보유두수 : 70두 현재보유두수 : 30두 한달에 20두정도 들어옴
인력현황	1명(예전에 공수의사였음)
구조현황 **(2005년)**	개 : 299마리 고양이 : 144마리(불임수술 후 방사)
평균보호일수	30일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7% 입양 : 47% 안락사 : 36% 기타 : 10%(학술)
예방접종주기	들어오자마자 전부시킴(피부, 기생충, 광견병)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포획비 : 3만원 관리비 : 1만5천원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없음
기타	유기동물에 대한 교육이필요함. 지역마다 지원되는 관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남.

⑥ 위탁보호시설(소형)

유기동물의 발생빈도수가 적은 곳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수의사를 통한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써 동물병원안에 위치한 합동사육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림2-14〉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VI)

시설현황	전체 30두가량 보호가능 1층 : 계류장, 진료실 수술실, 미용실
인력현황	2명
구조현황	한달 20두 정도 구조되어옴 개90%, 기타10% 기타는 고양이90%, 조류 및 파충류, 수류10%
평균보호일수	30일
유기견처리비율	인도 : 5% 입양 : 65% 안락사 : 20% 기타 : 10%
예방접종주기	진료후 필요시
운영비 및 예산지원현황	1마리당 15만원이 지원됨 (10마리 이상부터는 지원이 안됨)
직원들의 예방접종주기	없음
기타	

〈표2-10〉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 분	문제점	해결방안
정부	중앙정부가 직접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체계 없다.	동물보호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및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동물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보호시설에 동물보호비 지원만을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동물 보호시설	*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므로 보호시설의 시설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이 없음. * 보호소의 시설이 열악하여 효과적인 동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소유자	* 사전 지식이 없이 사육이 시작되어 유기동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음	
입양자	* 재입양시 입양자에 대한 교육부재로 인해 재유기 될 가능성이 있음	

제 3 절 동물사체 처리 실태

2006년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는 대략 3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 10년을 계산한다면 한해 평균 30만 마리가 사망하고, 분양된다.

사망한 이들 30만 마리는 현행법상 두가지 형태의 사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로 인정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발생하는 거즈, 사체의 일부, 주사기 등 기타 폐기물과 섞여서 소각처리되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현재의 법은 살아서는 반려동물이지만 사망하면 곧바로 쓰레기화가 되므로 사육주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한해 평균 사망추정치인 30만 마리를 무게로 환산하여 70%인 소형견은 평균 무게 3kg, 나머지 30% 인 중대형견은 평균 무게 15kg을 대입한다면 연간 2,000톤의 사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에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여기저기 그것도 주거시설과 가까우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는 뒷산, 야산에 불법으로 매장되고 있으니 지하수와 토양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사랑받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절차의 장례절차를 밟는 것은 신의와 책임감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1. 불법매장 사례

매년 발생되는 30만 마리의 개 사체 중에 애견장례업체를 통해서 처리되는 사체와 동물병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전체 사체 중 50%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불법매장으로 처리되는데 그 마릿수는 연간 15만 마리, 사체의 무게는 1,000 톤에 육박한다.

불법매장의 장소로는 아파트 단지내 조경화단, 단독주택의 화단, 주택가 인근의 야산, 가족묘지 주변이 이용된다.

2. 장묘업체 운영 실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소각장과 계약하여 처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장례 또는 소각처리를 영업하고 있는 10여곳 미만의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장묘업체에 대한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설 장례업체(Ⅰ)

소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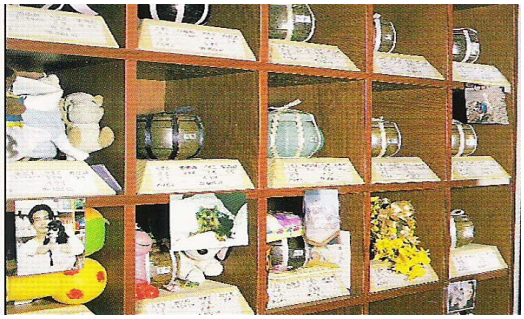

납골당

〈그림2-15〉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Ⅰ)

시설현황	대지 : 400평 건평수 : 200평 지상2층 : 1층→휴게실, 화장로, 입관실 2층→납골당(일반실, 고급실) 납골칸 : 8,000기 화장로 : 25k/시간 2기 이동식 화장로 25k/시간 1기
인력현황	3명
장묘비용 및 운영비	사체 7㎏까지 15만원 그 이상은 1㎏당 1만원씩 추가 납골당 관리비(1년기준) →일반 : 5만원 →고급 : 20만원 1마리 화장하는데 무게와 상관없이 약20ℓ의 연료(경유)가 들어감.
장묘처리비율	한달평균 150~200두 가량 처리 강아지80%, 기타동물20%정도 기타동물에서는 고양이가80%, 토끼 및 조류/파충류20%
납골비율	화장 후 70%정도는 주인이 가져가고, 30%가량 납골당에 비치
기 타	서울·경기지역 1달 장묘 처리두수는 약300~350두로 추정

㉡ 사설 장례업체(Ⅱ)

시설전경

납골당

〈그림2-16〉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Ⅱ)

시설현황	대지 : 400평 건평수 : 140평 지상2층 : 1층→카페테리아, 화장로, 입관실, 사무실 2층→납골당(일반실, 고급실, VIP실) 납골칸 : 1,200기 화장로 : 30k/시간 2기(현재 1기만 가동됨)
인력현황	3명
장묘비용 및 운영비	7㎏까지 15만원 그 이상은 1㎏당 만원씩 추가 납골당 관리비(2년기준) →일반 : 10만원 →고급 : 30만원 →VIP : 60만원 1마리 화장하는데 무게와 상관없이 약20ℓ의 연료(경유)가 들어감.
장묘처리비율	한달평균 200~250두 가량 처리 강아지70%, 고양이20%, 기타10%정도 기타동물에서는 토끼 및 조류/파충류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남
납골비율	화장 후 50%정도는 주인이 가져가고, 50%가량 납골당에 비치
기 타	

3. 감염성폐기물 처리

동물병원을 통한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사육주가 병원에 의뢰
㉡ 병원에서 사망확인서 작성
㉢ 병원에서의 사망이 확실하면 [감염성폐기물]이고, 사업장소에서 사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됨
㉣ 폐기물처리업체 수거
㉤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됨

위처럼 처리되는 비용은 동물병원에서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과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처리업체 지급 금액은 사체 1kg 당 5,000 원 이하로서 3kg 정도의 소형견은 15,000원이 지급된다.
반면 사육자로부터 동물병원이 받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2-11〉 동물사체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 분	문제점	해결방안
정부	현행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반려동물사체만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동물전용 장례업자에 대한 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자치단체	동물사체의 타인소유지에 불법매장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장례업자	* 반려동물 관련법이 없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이 없음	
사육자	* 주택가 인근지역의 타인소유지 또는 국유지, 공원 등에 불법매장을 함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제 3 장

반려동물 관리법령 고찰

제 1 절 동물보호법

제 2 절 동물 관련 법제 현황

KIE
www.dict.or.kr

제 1 절 동물보호법

1. 동물보호법 연혁 및 변천사

제정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 4379
동물보호법전문	동물보호법 [제정 1991.5.31 법률 제437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농림수산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1차 개정	1996년 8월 8일 법률 제 5153
주요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8>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8>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2차 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 5443
주요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3호]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8, 1997.12.1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3차 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 5454
주요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차 개정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7167
주요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7167호]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8, 1997.12.13, 2004.2.9>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5차 개정	2005년 10월 13일 개정안 공고 현재 개정 진행중

제 2 절 동물 관련 법제 현황

동물관련법령 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보호법외에 법령 중 축산관련과 야생동물을 제외한 본 보고서의 핵심내용인 반려동물 관련법령은 민법과 공동주택관리령, 운수 사업법, 철도법 등 다양한 부서에서 제정된 법령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가. 주운 강아지에 대한 권리 문제〈민법 제252조, 제253조〉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불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다. 애완견판매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5-21호)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

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라.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0조 운송약관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 제3호〉
제 10 조(물품등의 소지제한)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3. 동물(애완용의 소 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철도법 제18조〉
제 18 조(객차 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마. 애완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애완동물의 탑승에 관한 규정(수탁수화물이나 기내진입수화물인 경우)
1. 수탁수화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의 1 & 2 참고).

-기내진입수화물로서의 허용조건
1. 애완동물은 의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우리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 탑승 중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탑승 중 애완동물을 우리밖으로 꺼내면 안된다.
4. 우리 하나에 한 마리의 개나 고양이 혹은 2마리의 새만이 기내진입수화물로 인정된다.

바. 애완견을 데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제 35 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

는 아니 된다.

사.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4호〉
제 26 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제 4 장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제도 고찰

제 1 절 반려동물 등록제

제 2 절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제 3 절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현황

제 4 절 반려동물 장례업자 등록제

제 5 절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현황

KIE
www.diet.or.kr

제 1 절 반려동물 등록제

1. 일본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은 광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견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의 소재지 관할 관청(도도부현 산하 시읍면 또는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나. 개의 종류, 생년월일, 모색, 성별, 이름

다. 기타 개의 특징 등

개가 등록이 되면 등록연도 및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감찰이 교부되며, 그 감찰은 항상 개의 목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감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의 소재지나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될 경우, 소유한 개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의 소유자는 소유한 개의 등록 이외에 별도로 생후 91일 이상의 개에 대하여 년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증표를 관할 관청에 제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광견병 예방 주사제표를 교부받아 등록시 발급된 감찰과 함께 개에게 부착시켜야 하며,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개의 등록 수수료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대개 3,000엔 정도이며, 이는 전액 개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1> 일본의 반려동물등록제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현황	역할분담	
반려동물 등록제	·년1회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의무화 ·생애 1회 등록 의무화 ·광견병 예방 주사제표 및 감찰의 부착	정부	관련법 관리
		자치단체	조례 관리 등록 관리
		동물병원	예방접종
		소유자	예방접종 및 등록 의무 주사제표 및 감찰 부착 의무

2. 미국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은 해당 주에 따라 등록대상 및 등록비용 등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오레건 주 크랙카마스시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오레건 주의 동물규정은 ORS CHAPTER 609(동물관리;외래동물들;판매업자)로서 소유한 개의 등록시기, 등록수수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 산하 시의 개의 관리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크랙카마스시의 동물 관련 조례는 TITLE 5 ANIMAL로서 개의 등록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크랙카마스시에 있어 개의 소유자는 생후 6개월이 지나던지 또는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개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25달러(1년 기준)의 등록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간주되는 가구의 2마리 개에 대하여는 등록 수수료가 50% 경감되며, 맹인안내견, 청도견에 대하여는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 크랙카마스시로 이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에 대한 기술서, 등록증 번호, 발행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마리의 개에 대하여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에 관할 기관에서는 등록증 및 인식표(무료)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의 목걸이 등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의 개(4마리 이상) 등록증이 발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한 후 인식표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개의 등록증은 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1년, 2년, 3년 간 유효하며, 등록증 만기 해당월의 마지막 날 이전에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2> 미국의 반려동물등록제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현황	역할분담	
반려동물 등록제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주기적인 등록 의무화 ·인식표 부착	정부	관련법령 관리
		자치단체	주 법령 및 조례 관리 등록 관리
		소유자	예방접종 및 등록 의무 인식표 부착 의무

3. 스위스

스위스의 동물 등록은 연방 동물방역법에 의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에 대하여 마이크로 칩으로 전자인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개에게 장착되는 마이크로 칩은 ISO 11784 & 11785에 부합되어야 하며, 원산지와 제조사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인식을 위한 마이크로 칩의 장착은 오직 수의사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야 하며, 마이크로 칩 장착시 다음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야 한다.

가. 개의 성명

나. 성별 및 생년월일

다. 견종 및 모색(毛色)

라. 번식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바. 칩을 장착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장착일자

전자인식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들은 수의사에 의해 개 소유자의 거주지가 속해있는 주의 관할 기관에 신고되며, 해당 주는 입력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데이터뱅크에서 처리 또는 대행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개 소유자는 데이터뱅크 운영자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주의 관할기관은 등록된 개의 소유자에게 개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증명서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번호

나. 마이크로 칩 장착시 입력된 데이터

다. 개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뱅크

또한 스위스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3> 스위스의 반려동물등록제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현황	역할분담	
반려동물 등록제	·마이크로 칩에 의한 전자인식 및 등록 의무화 ·개 증명서 제시 의무화	정부	관련법 관리
		자치단체	데이터뱅크 운영 또는 위탁 관리
		수의사	마이크로 칩 장착
		소유자	등록 의무 개 증명서 제시 및 개의 출처 정보 제공

4. 독일

독일의 반려동물의 등록은 해당 주의 축견세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산하 쾰른시의 축견세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쾰른시 축견세 조례에 의하면 축견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쾰른시에 거주지를 소유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마리 혹은 다수의 개를 사육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의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개 소유자의 전입

: 전입 후 4주 이내에 신고

나. 소유자에 의해 사육되는 암컷에서 출산된 개

: 6개월이 지난 후 4주 이내에 신고

다. 보관 또는 시험적인 사육 또는 훈련을 위한 사육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 3개월 기한이 초과한 달 이후 4주 이내에 신고

위와 같이 등록된 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개 한 마리당 156유로가 징수된다. 또한 연방사회보장법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1마리의 개에 한하여 1년간 60유로의 세금만 징수되며, 장애인의 보호와 도움에 기여하는 개, 구조견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개는 그 증명을 통하여 세금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개의 소유가 신고되면 납세 고지와 함께 축견세 표찰을 발송하는데, 이 표찰은 소유자의 주택 외부 또는 소유 토지 울타리 외부에서 잘 보이게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개의 소유자는 소유하던 개를 팔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망했을 경우, 개의 소유자가 다른 시로 전출할 경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4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말소신청과 함께 기 수령한 축견세 표찰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개 소유자의 신고 및 말소신고, 축견세 표찰 착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방조세법에 따라 세금포탈죄로 추소된다.

또한 독일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4> 독일의 반려동물등록제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현황	역할분담	
반려동물 등록제	·매년 1회 등록 ·축견세 납부 ·축견세 표찰 부착	정부	관련법 관리
		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리
		세무서	등록관리
		소유자	등록 의무 축견세 납부 의무 표찰 부착 의무

제 2 절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1. 일본

일본에서는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의 취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취급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축산 농업 관련 동물, 시험연구용 동물,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용 동물은 제외)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취급업의 범위를 동물의 판매(판매를 위해 동물을 번식시키는 번식업도 포함), 대출, 보관, 훈련, 전시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취급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주소, 대표자명
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동물취급책임자의 성명
라. 취급업 종류별 업무 내용 및 실시방법
마.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
바. 사육시설의 소재지, 구조 및 규모, 관리방법

위의 신고사항 이외에 사육시설의 평면도(사육 또는 보호시설, 세정 및 소독시설, 사료보관시설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부근의 배치도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물취급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해지는데 도쿄도의 경우, 최초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일 경우에는 한 종목당 15,000엔을 내야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할 경우에는 2,800엔을 내야 한다. 그리고 동물취급업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금번에 개정된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취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중인 동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취급책임자(동물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동물취급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육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육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① 케이지, 조명설비, 급수설비, 배수설비, 세척설비, 소독설비, 폐기물 집적설비, 동물 사체 일시 보관장소, 사료 보관설비, 청소설비, 공조설비, 차광설비, 훈련장 등을 갖출 것

②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마루, 내벽, 천정 및 부속설비는 위생상태의 유지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④ 사육 또는 보관을 하는 동물의 종류, 습성, 운동능력, 수 등에 따라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일 것

⑤ 사육시설 및 부대설비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규모일 것

⑥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과 관련되는 작업에 실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⑦ 사육시설에 구비하는 케이지는 다음사항을 충족할 것

㉠ 세척이 용이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상 지장이 있는 재질을 이용하지 않을 것

㉡ 바닥은 분뇨 등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측면 또는 천정은 환기가 확보되어야 하며 케이지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루 등에 고정하는 등 충격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 구조 및 강도일 것

나. 동물의 관리방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이유 등을 마치고 성체가 먹는 먹이와 같은 먹이를 자력으로 먹을 수 있게 된 동물을 판매에 제공할 것

② 판매업자 및 대출 업자에 있어서는 사육 환경의 변화 및 수송에 대해서 충분한 내성이 갖춰진 동물을 판매 또는 대출에 제공할 것

③ 판매업자 및 대출 업자에 있어서는 2일 이상 그 상태(설사, 구토, 사지의 마비 등 외형상 분명한 것에 한정한다.)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동물을 판매 또는 대출에 제공할 것

④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그 생리, 생태, 습성 등에 일치하는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하고 다음에 언급하는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문서(전자적 기록 포함)를 교부해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문서를 수령했던 것에 대해 고객에게 서명 등에 의한 확인을 받을 것. 다만, 동물 취급 업자를 상대방으로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터 ㉱까지 언급한 정보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하면 충분하다.

㉠ 품종 등의 명칭

㉡ 성 성숙시의 표준 체중, 표준 체장 그 외의 몸의 크기와 관련되는 정보

㉢ 평균수명 그 외의 사육 기간과 관련되는 정보

㉣ 사육 또는 보관에 적절한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 적절한 급이 및 급수의 방법

㉥ 적절한 운동 및 휴양의 방법

㉦ 주된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증 그 외 해당 동물이 걸릴 우려의 높은 질병의 종류 및 그 예방 방법

㉧ 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의 방법 및 그 비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

㉨ ㉧에 언급한 것의 외 질서 없는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불임 혹은 거세의 조치를 불가역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기의 금지 그 외 해당 동물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내용

㉪ 성별의 판정 결과

㉫ 생년월일(수입 등이 된 동물로서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및 수입 연월일 등)

㉬ 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의 실시 상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

㉭ 생산지 등

㉮ 소유자의 이름(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동물의 병력, 백신의 접종 상황 등

㉰ 해당 동물의 부모 및 동복자에 관련되는 유전성 질환의 발생 상황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하고 또한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에 의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 ㉠부터 ㉰까지 언급하는 것 외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사항

⑤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계약에 임하고 사육 또는 보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 등을 실시한 동물에 대해서 수의사가 발행한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등과 관련되는 증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 또한, 해당 동물의 구입처로부터 받은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등과 관련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아울러 교부하는 것.

2. 영국

영국의 동물 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판매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반려동물법(Pet Animals Act 1951)과 번식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번식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개의 번식과 판매(복지)법(Breeding and Sale of Dogs(welfare) Act 1999)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펫샵 면허제에 관련된 제반사항 및 개의 번식과 판매(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번식장 면허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가. 펫샵 면허제

반려동물법에서 규정하는 판매되는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키울 목적으로 키워지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모든 관상용 동물(척추동물, 포유동물, 새,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신만이 소유하거나, 자신이 번식시킨 순종동물을 판매하거나, 키우고 있는 동물의 자식을 판매하는 것 만이라면 판매업 면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펫샵은 위치한 지역의 당국에서 매년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면허 발급당국은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동물의 복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만족하여야만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① 동물들은 언제나 적절한 크기, 온도, 밝기, 통풍, 청결함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사육되어져야 한다.
② 동물들은 적절한 음식과 마실 것이 주어져야 하며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되어야 한다.
③ 포유동물은 너무 어린 나이에 팔리지 말아야 한다.
④ 동물들간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모든 정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

다.

⑤ 화재나 다른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한 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허가조건은 허가관청에서 면허가 발급될 경우 면허증에 표기되어지며, 허가조건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법령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역당국의 관리나 수의사 혹은 개업수의사가 해당 점포와 그곳의 동물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막거나 늦추려고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그리고 반려동물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벌금형 또는 구속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거리나 공공장소 또는 시장의 가판이나 수레 등에서 동물을 파는 영업을 하는 행위

②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단, 12살 이하라고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나. 번식장 면허제

개의 번식과 판매(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개 번식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다음의 허가조건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개들은 언제나 건물, 숙소 크기, 거주견의 수, 운동시설, 온도, 밝기, 통풍, 청결성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있어야 한다.

② 개들에게는 적절한 음식, 음료, 침구가 주어져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되어야 한다.

③ 개들 사이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화재나 다른 위급상황에서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⑤ 번식장에서 옮겨질 때 적절한 음식, 음료, 침구가 주어져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1년 이하의 암캐는 교배를 해서는 안된다.

⑦ 한 마리의 암캐가 6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⑧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⑨ 규정에 의한 서류에 정확한 기록이 점포에 남겨져야 하며, 지역당국이나 번식장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수의사/개업 수의사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조건은 허가관청에서 면허가 발급될 경우 면허증에 표기되어지며, 허가조건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법령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역당국의 관리나 수의사 혹은 개업수의사가 해당 점포와 그곳의 동물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막거나 늦추려고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허가받은 번식장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면허의 취소, 개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① 허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사육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를 판매하는 행위
② 허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사육장 주인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다시 개를 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 판매하는 행위
③ 허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사육장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후 8주가 되지 않은 개를 판매하는 행위
④ 허가 받은 번식장에서 태어나지 않은 개를 허가 받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사육장 주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⑤ 배달시 ID 태그나 뱃지가 달린 칼라를 하고 있지 않은 개를 허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사육장 주인에게 판매하는 행위(ID 태그나 뱃지에는 개의 생일, 허가 번식장에서 개에게 부여한 ID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호주

호주의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8개의 행정지역 단위로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이중 본 보고서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동물복지법령 중 펫샵에 관한 규약을 판매업자 관리제도의 사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소매를 통하여 반려동물로서 팔리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쥐, 생쥐, 새, 물고기 및 기

타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약에서는 이러한 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규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펫샵의 운영관리 기준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는 펫샵의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동물을 보호할 때는 물리적, 행동적,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람, 다른 동물 또는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다. 동물의 휴식, 일어서고, 기지개를 펴고, 수영하고, 날아다니거나 혹은 공간에서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마. 질병, 스트레스, 상처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바.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적합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동물의 건강과 위생적인 장소가 유지되어야 한다.
아. 동물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사료의 급여, 물의 제공 그리고 점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모든 펫샵 직원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 적합한 기록의 조사 및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펫샵의 위치 선정 및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펫샵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및 상해를 유발할 지나친 소음 또는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숙소는 상해, 질병, 도난 또는 도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 동물의 숙소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동물의 숙소는 청소, 급식, 급수 및 정기검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동물 숙소의 모든 표면은 청소 및 살균이 용이하도록 도색되어야 하며, 독성이 없는 페인트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규약에서는 수용동물의 수용환경(온도, 소음, 조명, 통풍, 안

전, 위생 등)에 대한 시설 및 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관리하여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가. 모든 직원은 동물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나. 직원들은 보호중인 각 동물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약에서는 개와 고양이 및 기타 종류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8주 이내의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개는 최근의 백신접종 증명과 함께, 디스템퍼, 간염, 파르보바이러스의 백신접종 없이는 판매될 수 없다.

다. 고양이는 최근의 백신접종 증명과 함께, 고양이 전염성 장염 및 고양이 호흡질병의 백신접종 없이는 판매될 수 없다.

라. 개와 고양이의 건강은 항상 체크되어야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질병징후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콧물이 나오는 코
- 눈물이 나고 충혈된 눈
- 계속되는 재채기
- 기침
- 구토
- 심한설사
- 절뚝거림
- 신체 부위의 출혈 또는 팽창
- 방뇨, 배변불가
- 식욕감소
- 체중감소
- 뚜렷한 통증
- 비틀거림 혹은 경련
- 잔뜩 빠지는 털

마. 숙소의 바닥은 신속히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한 물질을 깔아야 한다. (신문 등)

바. 고양이는 깔짚, 톱밥, 대팻밥, 모래 혹은 분쇄된 종이와 같이 적당한 깊이의 깔것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개와 고양이는 종, 종족, 연령에 적합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영양학적으로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아.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 임신, 수유중인 동물들, 6개월 내의 개, 8개월 내의 고양이는 하루에 두 번씩 먹여야 한다.

차. 음식은 위생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깨끗하고 엎질러지지 않는 용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카. 공급되는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한다.(예를들어, 마른 음식은 설치류가 없는 곳, 신선한 고기는 냉장된 곳 등)

타. 급식용기는 각각의 개, 고양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2주 이내의 고양이는 그릇 하나에 3마리를 먹일 수 있다.

파. 개는 자유로이 뛸 수 있는 곳에서 혹은 데리고 걸을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 하루 두 번, 10분씩 운동하여야 한다.

제 3 절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현황

1. 독일

본 장에서는 독일의 동물보호연합에서 제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동물보호소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검역소

나. 동물병원

다. 수용동물을 위한 일반 숙소

라. 동물들을 위한 충분한 활동면적

마. 퇴직동물들을 위한 시설

여기에서 검역소와 동물병원은 공간적으로 이격되어야 하고, 기타 시설과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일반 숙소의 내부공간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새로 수용된 동물 중 소유자가 인수하러 오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

① 구충

② 외부 기생동물 제거

③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예방접종

④ 제3자에 양도 이전에 동일성 확인을 위한 표시 및 등록

나. 수용동물에 대한 데이터 관리

① 동물의 종류와 품종

② 성별 및 특징

③ 동물의 나이

④ 인도일자

⑤ 이행된 의료조치

⑥ 현재 체류지에 관한 내용

한편 수용동물이 재분양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적으로 성년이 된 사람에게만 재분양되어야 한다.

나. 고양이는 가능한한 중성화 수술 후 재분양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취득자에게 조속히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우호성, 무는 성질 등 알려진 특별한 성격들을 양도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세계동물보호단체(WSPA)

본 장은 세계동물보호단체(WSPA)에서 제시한 동물보호소의 상세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격리수용

① 검역중인 동물
② 개와 고양이
③ 아프거나 다친 동물들
④ 수유중이지 않은 자견 및 자묘
⑤ 발정중인 암컷으로부터의 수컷 격리
⑥ 공격적인 동물
⑦ 수유중인 어미와 그 자식
⑧ 섞어놓지 않는 종들은 서로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수용

나. 바닥

① 수용시설 바닥은 물이 차지 않도록 외부 배출구 쪽으로 경사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또는 살균이 가능한 비침투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견사 사이 벽

① 견사간 벽은 185㎝이상 되어야 하며, 오물 등이 견사사이에 흐르는 것을 방지.
② 견사사이 벽의 재질로서는,
- 콘크리트블럭 : 에폭시수지로 봉입한 비침수성
- 콘크리트 기초에 철골을 심은 것
- 유리섬유로 된 견사, 바닥, 내벽, 문
- 타일이나 유리블럭

③ 견사 벽 상단은 61㎝이상 되도록 하고 철사망으로 만든다.

라. 배수

① 배수로나 배관시설 설치

② 통로의 배수로는 대소변으로 오염되지 않게 독립적이어야 함.

마. 난방 및 냉방

① 갓 태어난 동물은 바닥온도가 24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 자란 큰 동물은 18~21도를 유지하면 됨.

② 공기순환조절장치 설치

바. 출입문과 자물쇠

① 케이지나 견사에 수용된 개들은 서거나, 눕거나, 돌아다니거나, 앉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함.

② 스테인레스 케이지의 규격

· 대형견(25kg 이상) : 24 평방피트

· 중형견(17~25kg) : 20 평방피트

· 소형견(5~17kg) : 12 평방피트

· 동물의 크기 구분없이 30평방피트 이상이 가장 이상적임.

③ 케이지내 개들은 최소한 아루에 두 번은 40평방피트 크기의 공간에서 운동을 해야 하며, 20분간 두 번씩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켜야 함.

④ 견사의 최적조건

· 24 평방피트(최상의 조건은 30평방피트 이상)

· 32평방피트 통로(최상의 조건은 60평방피트 이상)

⑤ 2~3마리를 수용하는 견사는 모든 개들이 정상적으로 서거나, 눕거나, 돌아다니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최소한 한 마리당 16평방피트의 공간이 주어져야 함)

⑥ 견사내 필요한 시설

· 24시간 마시기에 적합한 음수시설(물통은 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청결을 위하여 매일 씻어주어야 함)

· 자동사료공급장치(매일 청소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함)

· 바닥 난방이 되지않을 경우 침구시설 제공

· 손쉽게 바꾸거나 세척할 수 있는 종이박스

사. 고양이의 수용

① 수용케이지의 시설기준

· 케이지의 재질 : 스테인레스, 유리섬유, 비침투성 재질

· 9평방피트 또는 0.84평방미터 이상
· 화장실 구비
· 수유중인 고양이, 갓태어난 고양이, 가족구성원을 위한 공간이외에 한 마리 이상 수용을 금한다.

② 고양이 방의 운영관리 사항
· 거세되지 않은 수컷의 암컷으로 부터의 격리
· 수유묘의 격리
· 자묘의 성묘로부터의 격리(부모는 제외)
· 3×4.5미터 공간에서는 성묘 15마리, 자묘 20마리까지만 수용
· 3마리 성묘당, 5마리 자묘당 한 개의(30×46센티미터) 화장실 할당
· 매일 습식 및 건식 사료 제공
· 한쪽에 숨거나 쉴 수 있는 박스 제공

아. 기타 시설기준

① 종사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비나 기록문서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② 접수실 공간은 편안함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야 함.

③ 안락사 실이나 사체 저장고는 견사에 접근이 쉬워야 하며, 일반인이 안락사 현장이나 죽은 사체의 이동현장을 볼 수 없어야 함.

수용중인 동물에 대한 급식 및 동물의 간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급식

① 6~12주령의 자견 및 자묘는 하루 세 번, 12주~12개월의 성견 및 성묘는 하루 두 번 급식하여야 한다.

② 건사료는 씹기 편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자견 및 성견 건사료는 자동급식사료통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성묘와 자묘는 건사료 또는 캔사료를 섞어서 준다.

④ 이름없는 사료는 먹이지 않는다.

나. 질병관리

① 최초 수용동물에 대한 검사항목
· 혹이나 종창; 탈모
· 탈력감; 식욕저하; 행동변화
· 구토; 과도한 기침이나 재채기; 과도한 머리 흔듦; 파행; 엉덩이

바닥긁기

· 귀, 눈, 코의 분비물; 귀악취

· 붉거나 염증성 잇몸; 흔들리거나 갈색양 치아

② 동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돌보는 숙련된 수의간호사나 수의사 및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청소

① 모든 견사나 케이지 그리고 바닥은 질병관리를 위해 따뜻한 물과 살균제로 매일 청소한다.

② 모든 동물들은 청소하는 동안 격리지역으로 옮겨서 물이나 살균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동물의 안락사

① 안락사는 최고의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종사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주기적인 자질, 태도 평가

· 문서화된 안락사 방침과 순서 제공

· 안락사를 행하는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조항을 작성

② 안락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 경구 및 주사용(정맥내, 복강내, 심장내) 페노바비탈을 투여한다.

· 주사(정맥내, 복강내, 심장내)에 의한 FP-3와 같은 국소마취제(리도케인)가 첨가된 페노바비탈의 투여가 허가되어야 한다.

· 8주령 이상 동물들에게 병으로 된 일산화탄소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 안락사 수단으로 큐라레형 제품인 T-61과 고압력을 이용한 방식이 적용되면 않된다.

③ 동물이 죽었는지 잘 체크하여야 한다.

· 안락사된 동물은 검사대에 올려놓고 바이탈사인(호흡, 심박동, 안구반사 등)이 확실히 멈췄는지 사후강직이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죽은 동물은 화장, 매장, 근처의 허가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④ 안락사된 케이스의 모든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용될 동물의 모든 서류가 보호소에 들어와야 하며 이 서류엔 그

동물들에 대한 설명이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야 한다. 또한 수의료 처치나 아니면 다른 보호시설에서의 처방이라든가 최초 분실되었던 당시의 기록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나. 이런 기록문서들은 일련번호와 함께 화일에 보관되어져서 보호소 직원이 쉽게 꺼내볼수 있어야 한다. 동물들이 입양되거나 재수용하거나 안락사 될때에 동물들 간의 혼선을 없애야만 한다. 케이지 카드 또한 준비해야 된다.

다.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각 동물은 그 동물들의 기록문서 번호를 포함한 목줄 또는 목줄+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케이지에 한마리만 수용시킨다면 목줄이나 인식표 없이 케이지 카드 내용에 기록문서번호를 기재한다.

라. 일과시작과 일과가 끝날 때 모든 동물의 수를 파악한다. 이런 작업은 카드기록과 일치해야하며 일일 데이터 기록엔 입양한 수, 수용한 수, 안락사한 수, 주인을 찾아준 수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내 동물들은 종별, 성별, 나이별로 분류되어야 한다.(나이는 4개월령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마. 모든 기부금, 호텔비용, 입양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주별 은행 입금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위해 매일 순서별로 기록해야 한다.

동물보호소에서 구비하여야 할 차량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은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각 보호소는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동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챠량이 한대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나. 동물들에 안정성, 보안성, 날씨에 따른 차단성, 충분한 환기성을 갖춘 차량이 제공되야만 한다.

차량내 동물은 따로따로 수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픈 동물을 위한 특수장비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특별한 간호와 처치가 동반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사체이동 차량이 없으면 사체를 담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 차량은 항상 청결해야하고 보호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 보이게 해야 한다. 포장/비포장 도로에서도 운전이 용이 해야 된다. 운전자는 주위 차량 운전자에 비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동물 구조 장비의 구비: 개/고양이 포획 장대; 그물; 사다리; 절망/유리섬유 케이지; 고양이 이동장; 밧줄; 가축을 위한 슬링이나 밧

줄; 등반용 족쇄; 공구상자; 도끼; 삽; 망치; 지랫대; 통증을 유발 않는 개/고양이 덫;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을 위한 응급처치셋

라. 차량 운전자에겐 아픈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안락사에 의해서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차량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제한다. 안락사 요하는 경우 운전자는 현장으로 수의사를 불러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운전자 스스로 안락사를 행하고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수의사로부터 안락사 판정법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3. 기타

가. 일본의 동물보호소 관리체계

일본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은 우리나라의 위탁관리 형태와는 달리 도도부현에서 직접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은 7일간 보호되고 있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양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기간내에 수용동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환수수료 및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역별로 차이가 남)을 지불한 후 반환되고 있다.

또한 보호소에 수용중인 동물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성인이어야 할 것, 보호소에서 주최하는 양도 강습회를 수강할 것, 불임수술 등의 번식제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개정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6월 2일 개정)에 따라 사육을 포기한 개, 고양이의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용시설,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2 범위내에서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본의 동물 보호소 관리에 따른 주체별 역할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5〉 일본의 동물보호소 관리에 따른 주체별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현황	역할분담	
동물보호소 관리	·정부의 예산 지원 ·도도부현에서의 설치 및 운영	정부	관련법 관리 보호소 설치 예산 지원
		자치단체	보호소 설치 및 운영관리
		소유자 및 양도자	반환 및 양도수수료 지불 동물의 적정 사육

나. 인도의 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사례

인도에서는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당 1개소 이상의 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동물학대방지법 제9조에 의하여 관련단체, 협회, 대학교, 연구소 등으로부터 보호소 설립 지역, 비용, 설립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비용의 90%까지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원대상 세부항목으로는 보호소의 건축비, 진료소 설치비, 급수시설 설치비, 의료시설 및 용품 구입비, 기타 등으로서 최대 25.00 Lakh[1)](51,550,000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1) 1 Lakh = 10만 Rupees, 1Rupee = 20.62원

제 4 절 반려동물 장례업자 등록제

1. 일본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동물 사체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협 및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반려동물 장례업자 등록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설 장례업자에 대한 허가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히다카시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장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반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당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애완동물 묘원이란 개, 고양이 그 외에 사육되고 있던 동물 사체의 화장에 필요한 소각시설, 해당 사체를 매장 또는 소골을 납골하기 위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을 합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관할 시내에서 애완동물 묘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허가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증이 발급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별도로 허가조건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이름)
② 묘원의 명칭
③ 묘원의 설치장소
④ 묘원의 설비 처리능력
⑤ 묘원의 설비 위치, 구조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⑥ 묘원의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나. 첨부서류

① 법인 등기부등본
② 묘원과 관련된 토지 등기부등본 및 공도의 사본
③ 묘원의 설치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상세도

④ 100미터 이내 주거세대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서
⑤ 묘원 설치와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다. 허가의 기준

① 공원, 학교, 탁아소, 병원 그 이외의 공공시설 및 주거지역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단, 100미터 이내 주거세대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가능
② 묘원 설치와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묘원은 배수가 잘되는 토지 및 공중위생상 지장이 없는 토지일 것
④ 묘원의 경계에는 장벽 또는 울타리 등이 설치될 것
⑤ 묘원의 출입구에는 대문이 설치될 것
⑥ 묘원내에는 빗물 또는 오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정한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
⑦ 소각시설에는 방취, 방진 및 방음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장치가 설치될 것
⑧ 묘원 설치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위의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중 ①~②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기관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③~⑥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례업자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징수되며 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되는 사용료는 해당 업체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애완동물 장례업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서에 기재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각종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권고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개선명령이,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그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또한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제 5 절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현황

본 절에서는 금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제 현황

일본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육되는 동물 및 특정동물에 대한 관리, 동물취급업자의 관리 등을 규정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성, 평성 18년 개정 공포)이 있으며, 또 하나는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실시 및 동물의 등록 관리를 규정한 광견병 예방법 (후생노동성, 평성 11년 개정 공포)이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례에서는 동물관리를 위한 주체별 책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동물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동물보호를 위한 해당 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사육자로 나누어지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 동물보호시설 및 소각시설 등의 설치·운영비의 지원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동물보호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광견병 예방을 위한 동물의 등록관리,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등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역할로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의식 계몽 및 홍보활동 등이며, 동물의 사육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소유자의 책무 준수,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동물의 의무적인 등록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사례

동물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례로는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위한 동물애호주간의 지정(매년 9월 20일 ~ 26일), 광견병 예방을 위한 해당 동물(개)의 등록제도 실시, 동물의 판매·보관·대출·훈련·전시와 같은 동물취급업자의 신고제도 실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동물에 대한

사육허가제도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었다.

4. 동물취급업자의 관리 현황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의 판매·보관·대출·훈련·전시(인터넷상으로 거래하는 판매도 포함)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금번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동물취급업자도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2007년 5월까지 갱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법률의 개정 전에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하여야 했던 “동물 취급업자와 관련된 사육시설의 구조 및 동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기준(평성 12년 6월 30일)”이 폐지되고, 동물취급업자와 관련된 사육시설 구조, 규모, 관리기준, 준수사항 등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있었다.

5. 동물 등록제 실시 현황

일본에 있어서의 동물 등록제 실시 목적은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광견병 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 후 90일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개의 등록은 개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장(특별구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읍면 또는 구청 산하 보건소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후 등록하던지 또는 수의사(동물병원)에게서 예방접종을 한 후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이 된 개에 대해서는 표찰(인식표)이 교부되며 표찰은 항상 개에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생 후 91일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한 개에 대해서는 주사제표가 교부되는데 주사제표는 항상 개에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 현황 (동물애호상담센터)

일본에 있어서 대부분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당 시읍면(특별구는 구)에서 직접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보호시설에 상주하면서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나 관련

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으며,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출은 알 수 없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로는 없으나, 금번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시설, 소각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7. 동물 장례업자 관리 현황

일본에 있어서 동물 장례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구체적으로 없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2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설 장례업자에 대한 허가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 운영중인 동물 장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설 장례업체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들 장례업체들은 소각로에 대하여 소방법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였고, 화장시설과 납골당 관리가 주요 업무였다.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설 장례업체의 경우에 각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동물의 무게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엔에서 40,000엔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동물 장례시설에서 화장되는 동물의 종류는 개가 대부분이나, 고양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장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제 5 장
반려동물 관리방안

제 1 절 관리현황 및 관리방안 배경

제 2 절 반려동물 관리방안

1. 반려동물 등록제
2. 판매업자 등록제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4. 동물장례업 허가제
5.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6.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KITE
www.diet.or.kr

제 1 절 관리현황 및 관리방안 배경

반려동물(애완동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키우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취미의 종류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경우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행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하나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취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은 공동주택에서의 냄새, 소음, 털날림, 배설물 발생, 교상 등이며 요사이는 유기동물 발생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반려동물의 현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의 고발자이자, 피해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80%의 대다수의 국민이며, 이시점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20%와 키우지 않는 80%인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며, 동물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적당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2 절 반려동물 관리방안

1. 반려동물 등록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현대의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는 인간의 친근한 친구이며, 인간을 위해 여러 가지 위험한 목적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유기가 되며, 유기가 된 개를 비롯한 기타동물들은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며, 야생화가 된 반려동물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이러한 반려동물의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20% 미만의 국민과 사육하지 않는 80%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도 반려동물은 관리되어져야 하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체별로 등록이 되어, 판매에서 사육,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

현대에 사육되어지는 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를 비롯, 조류, 파충류, 설치류, 열대어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지는 반려동물의 95% 이상이 개이고, 등록제의 도입초기단계에서 반려동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을 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에 대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등록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반려동물 유통 체계 및 유기동물 발생 억제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반려동물과 사육주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표5-1>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국가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시행 유무	◎	◎	◎	×
등록 대상	개	개	개	×

나. 반려동물 등록제 관리방안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국민은 전체의 15% 선인 700만명으로 추정하며 사육되는 개는 30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단일 취미로는 상당한 규모로서, 이러한 개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절하며 개를 키우는 사육자들과 키우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도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반려동물과 사육자의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근절하며, 더 나은 사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5-2> 반려동물등록제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방안	역할분담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 등록증 발급 마이크로 칩 제공 공유 서버 구축	정부	관련법 개정
		자치단체	관련조례 제정 등록증 등 제작
		민간단체 판매업소	등록대행 서비스 등록제 홍보
		소유자	등록 의무

다. 동물의 등록방법 비교

<표5-3> 동물의 등록방법 비교표

구 분	등록 자격	등록 장소	장단점		비용
			장점	단점	
표찰	반려동물 판매등록이 된 자 또는 업소	번식장, 애견센터, 동물병원, 동물관련 단체 등	부착이 용이	탈부착이 가능 위변조가 가능 표찰의 기입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해야 함 외장형이므로 개가 씹을 수 있고, 목걸이가 벗어질 수 있으며, 장애물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음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장점	**단점**	
전자적 인식장치	반려동물 판매등록이 된 자 또는 업소	번식장, 애견센터, 동물병원, 동물관련 단체 등	제거가 어려움 위변조가 불가능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스케너가 필요	ISO 인증 제품의 외국산 수입가격과 국산 제조납품가격은 2,000~5,000원 정도로 파악됨

위 의 표에서처럼 동물등록을 하는 보편적인 두가지 방법인 전자적인 식장치(마이크로 칩)와 표찰(인식표)을 비교해본 바,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목적인 반려동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유기동물발생, 교상사고, 반려동물의 분양 양도에 따른 각종 분쟁, 불법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도덕적 결함이 적고, 자치단체에서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자적인식장치(마이크로 칩)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밖에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15% 정도의 사육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당하는 85%의 비사육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덕적 결함이 배제된 방법으로서 전자적인식장치가 반려동물등록을 위한 수단으로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① 반려동물 소유자의 역할

반려동물 소유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며,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유기반려동물 감소와 동물학대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③ 반려동물 등록 방안

㉠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개로 한정한다.

㉡ 등록시기

생후 90일 이상된 개의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만일 생후 90일 이전의 개를 취득한 경우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생후 120일이 지난 미등록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

- 소유자의 정보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개의 정보
  · 개의 소재지

· 이름 및 생년월일
· 견종 및 성별
· 모색
· 기타 신체적 특징(귀의 크기와 무늬, 꼬리의 형태 등)

- 첨부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 등록방법

전자적 인식장치(마이크로 칩)를 장착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애견센터, 번식장, 훈련소 등 반려동물을 취급하며 판매업소 등록이 된 장소에서 서버(정부 직영 또는 민간 위탁)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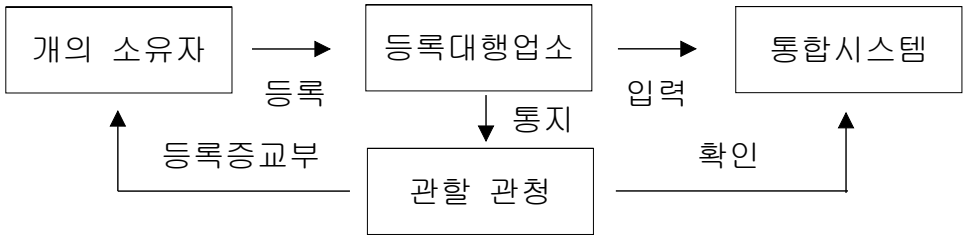

㉤ 반려동물등록대행업소의 범위

- 반려동물판매업소로 등록된 업소
-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
- 정부에서 인가받은 반려동물관련단체
- 장례업체는 예외로 사망신고를 위한 등록서버의 접근을 허용한다.

㉥ 등록 후 행정조치사항

등록 후 관할기관에서는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연도, 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증을 개의 소유자에게 발송해야 된다.

㉦ 변동신고 사항

개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유자의 변경
- 주소지의 변경

㉧ 개의 사망신고

등록된 개가 사망하였을 때 서버를 통하여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말소신고는 사망견의 확인이 가능한 장례업체, 동물병원에서 확인한 후 신고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사육주는 자치단체에 사망견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등록의 갱신

최초 등록한 개의 소유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 등록증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

㉷ 등록수수료

개의 등록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는 개 1마리 당 45,000 원이 적당하며, 전액 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록수수료라 함은 전자적인식장치의 구입미용과 장착비용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공유 서버에 접속하여 개의 등록대행을 하는 모든 비용을 더한 수수료를 뜻한다.

즉, 등록비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 칩 : 5,000원

  한국애견연맹에서 장착하고 있는 마이크로 칩(스위스의 DATA MARS社, 독일의 TROVAN社)의 단가는 5,000원 내외(환율에 따라 변동)이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VID 칩(버박/ 사이언스 다이어트)의 경우 수입원가가 5,000원 내외이므로 5,000원으로 책정

- 장착 및 등록대행 비용 : 20,000원

  * 장착비용: 5,000 원
  * 등록대행비용: 15,000 원

  장착비용과 등록대행비용은 실제로 장착하는 장착비와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모든 비용과 정부에서 배포하는 각종 홍보물을 사육주에게 직접 전달하며, 계몽하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전체등록두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20,000원이 적정선으로 판단됨

- 등록세: 20,000 원

  * 등록증 제작
  * 등록증 우송
  * 통합시스템 관리비
  *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 환경부담금(공원비치 변봉투 제작 비용 등)
  * 동물보호소 지원금 등

따라서 등록비용은 마이크로 칩 구입비용, 장착 및 등록대행 비용, 기타 등록세를 합친 45,000원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정부에서 인가받은 개(경찰견, 군견, 공항 마약 탐지견, 공항 육류 탐지견 등) 등록비 면제
- 정부에서 인가받은 복지시설에서 사육하는 개 등록비 면제
- 중성화 및 불임수술한 개는 등록비의 50% 감경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복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치유견 등)는 등록비의 50% 감경

㉤ 개의 등록으로 인한 혜택 부여

개를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을 부담하는 예방접종에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기타사항

※ 통합시스템 운영 대행업자의 선정 방법

등록대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질 방법에 표찰, 전자적 인식장치 등의 표준샘플을 제시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최우수 업체를 선정

① 취급되어질 제품의 설명서
② 통합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서
③ 등록대행 수수료
④ 사업계획서
⑤ 회사소개서

2. 판매업자 등록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동물 판매업자 또한 어떠한 형태이든 등록이 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같은 목소리로 병든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광고와는 다른 조건의 반려동물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판매업자의 등록은 일반 사업 신고와는 다르게 등록조건에 동물을 사랑하고, 전문지식을 검증받는 등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병든 강아지를 양산하는 곳이 판매소 한곳의 문제가 아니고, 번식장 및 판매에 관련된 모든 유통조건과 현재 판매되는 강아지의 개월 수에서 문제가 있다.

어미로부터 “모유이행항체”를 수유기간 60일 동안에 전달되는 시기가 지난 후에 판매에 적당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정 판매 개월 수를 60일 이후로 정한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후 40일에서 50일 사이의 강아지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강아지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외국과는 다르게 번식장 한곳에서 많은 개체수를 번식하고 있으므로 구충제, 기본적 예방접종비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어린 강아지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인 원충과 장염, 피부병에 대한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판매소를 제재하는 차원에서의 등록이 아니고, 건전한 거래질서로 판매업소의 이익증대와 반려동물 구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을 위한 판매업자 등록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5-4> 판매업자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국가	일본	호주	유럽(영국)	한국
시행 유무	◎	◎	◎	×
판매업 범위	판매, 대출, 보관, 훈련, 전시	판매	판매, 번식	
판매동물 범위	포유류, 조류, 파충류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쥐, 생쥐, 새, 물고기 및 기타 척추동물	척추동물, 포유동물, 새, 파충류, 양서류, 어류	

나. 판매업자 등록제의 관리방안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목소리이다.

요사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제품들도 생산지 표시가 필수이고, 이 제품을 파는 곳도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가격과 제원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이러한 공산품 등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족을 입양한다는 마

음으로 구입하는 미래의 사육주들을 위해서는 공산품 보다 더 확실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등록제가 실행되어야 판매업소의 관리가 원활해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판매업소에서의 판매되는 반려동물 또한 등록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선행 및 보완제도로서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라고 볼 수 있다.

<표5-5> 판매업자 등록제의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방안	역할분담	
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정부	관련법령 개정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자치단체	조례 개정 제도 홍보
		판매업자	등록 의무

① 판매업자의 역할

판매업자는 판매업자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반려동물 취급업자를 말하며, 반려동물 취급업자는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하여 건강한 반려동물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거래시 등록을 대행하는 역할을 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해당 반려동물의 습성, 생리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이 학대받거나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계몽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② 판매업자의 책무

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를 필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시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할 의무가 있다.

판매업자는 등록시 받게 되는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구입자 또는 동물보호감시관의 요청시 등록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다. 등록제 신고사항 및 조건

① 판매업자의 범위

현재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곳은 애견센터, 동물병원, 번식장, 개인가정이며, 알선을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범위는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곳인 사육, 판매

(번식 포함), 치료, 보관, 교배, 훈련, 전시, 반려동물관련행사, 미용관리, 동물임대 등 중에 반려동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번식업,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배업 이 세가지 업종을 판매업자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취급 반려동물의 범위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개, 고양이, 족제비류, 설치류, 조류, 열대어, 곤충 중에 애완동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나머지 동물과 곤충은 '기타반려동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판매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신고사항 및 방법

㉠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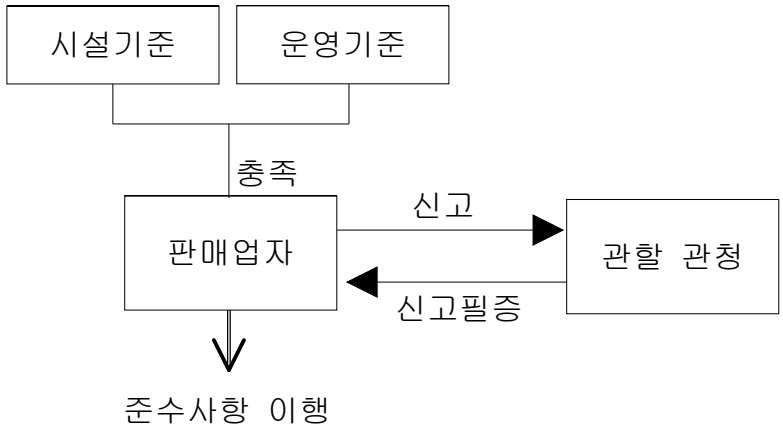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대표자명
-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
- 판매업의 종류
-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
- 시설의 구조 및 규모
- 시설 관리방법
- 동물관리자 인적사항
- 첨부서류
  · 사육시설의 평면도

④ 판매업자 신고필증의 교부

해당기관은 신고사항이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하며,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상호, 주소, 대표자명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판매업자 신고필증은 영업장소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변경신고

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변경 또는 신고한 사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사항이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기관은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상호, 주소, 대표자명
-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
- 판매업의 종류
-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
- 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동물관리자 인적사항

⑥ 동물관리자의 자격요건

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동물관리자는 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동물의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수료한 자 이어야 하며, 판매업자 등록시 동물관리자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 사육하는 동물의 종류 및 습성에 따른 사육장소를 학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동물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출 것.
-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 환기, 조명이 유지 될 것
- 사육시설은 직사광선이나 외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질병 또는 부상당한 동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동물을 적절하게 격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양호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바닥, 내벽, 천장 및 부속설비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위생적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구비할 것
- 세척 및 소독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위생적으로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오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동물의 도주 및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사육시설은 동물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일 것
- 바닥, 내벽, 천장 및 부속설비는 사육동물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⑧ 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동물의 관리기준

㉠ 사육하는 동물의 종류 및 습성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할 것
- 사육한 동물의 종류, 습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정한 사료의 급여 및 급수를 행할 것
-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을 동일 사육시설에서 사육할 경우 동물간의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어린 연령의 동물은 어미와 같이 사육하는 등 건전한 육성 및 사회화에 노력할 것

㉡ 동물의 위생확보 및 부상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할 것
- 새로운 동물을 사육시설에 반입할 경우 해당 동물이 건강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다른 동물들과 접촉시키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의 질병 및 상처 예방, 기생충 구제 및 백신접종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것
-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사육시설 및 설비 또는 기구에 대한 청소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동물의 사체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동물의 도주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할 것
- 사육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보수 점검을 행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동물의 상태 및 수를 확인 할 것
- 동물이 도주할 경우 조치를 미리 설정해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신속한 포획 등에 노력할 것

⑨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태어난지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를 판매하지 말 것

㉡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

㉢ 판매업자는 판매한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방법, 해당 동물에

게 기인한 감염성 질병에 관한 정보 등 판매 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구입자에게 제공 및 숙지시킬 것

㉣ 판매업자는 동물의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소재지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는 어린 연령의 동물을 판매할 경우 필요한 질병예방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번식업자는 유전성 질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동물을 번식용으로 제공하지 말 것

㉦ 번식업자는 1년 이하의 개는 교배를 시키지 말 것

㉧ 번식업자는 암캐에게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날부터 10개월 전에 새끼를 낳게 하지 말 것

또한 생후 8년이 경과한 개는 교배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 교배업자는 한 마리의 수캐가 일주일에 두 번 이하의 교배를 하도록 할 것

㉩ 판매업자는 1년에 한번씩 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⑩ 수수료

판매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따른 수수료는 각각 40,000 원 ~ 45,000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가. 현황 및 설치배경

우리나라에 애완동물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개와 고양이의 개체수는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카드 발급 또한 자유로워 학생들까지 손쉽게 애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이 당시부터 애완동물을 주제로 한 전문 프로그램인 SBS: 동물농장, KBS: 주주클럽, MBC: 와우 동물천하 등이 신설되고 이외에 정보프로그램인 화제집중, 리얼코리아, 세상의 아침 등과 다수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개가 수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 서울, 스포츠 투데이, 일간 스포츠, 굿데이에 애완동물 페이지가 신설되고 조선, 동아, 중앙 등 일간지에서도 주말판에 개의 소개 및 관리요령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에서의 잦은 노출로 인하여 누구나 애완동물을 구입하려

는 욕구가 발생했고, 무책임하게 구입된 수많은 애완동물들은 키우기 어려워지자 친구집이나 고향의 부모들에게 보내지고, 이러한 기회도 없는 애완동물은 관리소홀로 분실되고 길거리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게 되었다.길거리의 애완동물을 구조하여 분실된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인계하고, 유기된 애완동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유기동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육자뿐만이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의 규모가 제각기 다르고, 시설도 다양하며, 운영방법도 일관성이 없으며, 보호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지급액도 서로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기동물관련 조례를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동물보호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5-6> 동물 보호시설 국가별 운영 현황

국가	일본	미국	유럽(프랑스)	한국
시행 유무	◎	◎	◎	◎
보호 기간	7일	6일	8일	30일

나.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방안

<표5-7> 동물 보호시설 확충에 따른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방안	역할분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동물보호법 개정 시설기준 수립 민간보호소 설치 지원 반환 및 입양신청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정부	관련법령 개정 시설기준 수립 재정지원
		자치단체	보호소 설치 및 민간보호소 설치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민간보호시설	보호소 설치 및 운영대행
		반환 및 입양자	사육자의 책무에 맞는 사육 의무

①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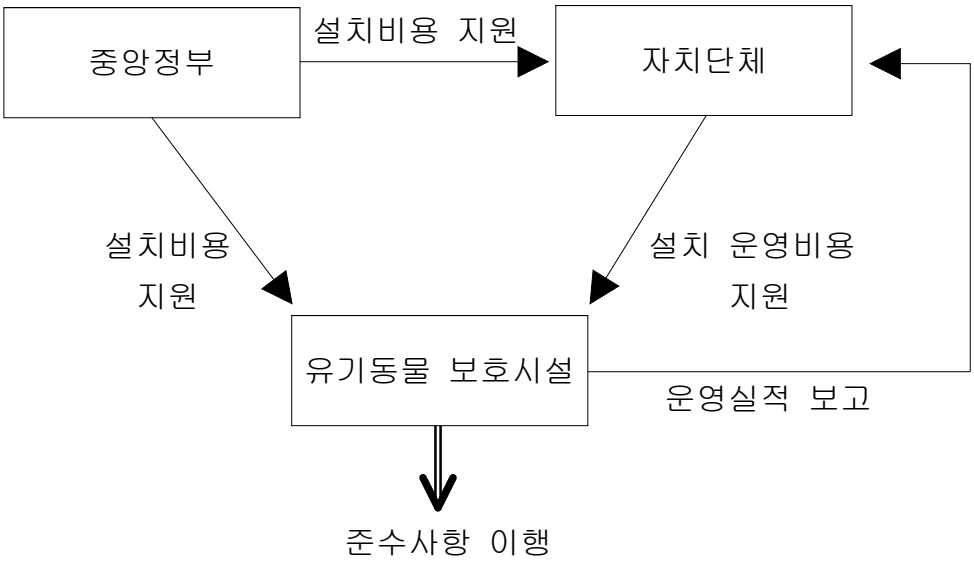

㉡ 보호시설 설치 면적

2005년 전국의 자치단체 유기동물 발생현황에 근거하여 유기동물이 제일 적게 발생한 전라북도지역은 연간 533마리, 제일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은 연간 22,018마리이므로 자치구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월간 최대수용 가능한 마릿수로 계산하고, 현행 유기동물보호조례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30일이므로 유기동물 발생이 적은 지역은 월간 50마리 이하, 최대의 경우 2,000 마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수의사제도를 이용한 동물병원에서의 소수의 유기동물보호는 제외하고, 월간 5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의 면적은 먼저 유기동물의 활동반경을 계산하여 적정 견사넓이를 산출하며, 보호소의 각종시설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은 견사넓이의 3배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보호시설은 수용 가능한 마리수가 차지할 적정견사 넓이에 3배 넓은 총면적위에 아래에서 정한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호시설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 직원숙직실 및 방역을 위한 샤워시설
- 신입동물 계류장(검역을 위함)

- 수용동물 진료소(수의사 상주)
- 수용동물 일반숙소 및 운동시설
- 모든 수용동물의 격리시설
- 수용동물 목욕 및 미용시설(분양, 인계시)
- 수용동물 사료 등 먹이보관창고
- 안락사 사체 보관용 냉동 및 냉장고
- 수용동물의 배설물 등 배출오염물질 보관소
- 경찰견, 군견, 세관 마약탐지견, 맹인안내견 등 목적에서 은퇴한 개들을 위한 보호시설

※ 다른 시설과 이격되어야 할 시설
- 신입동물 계류장
- 수용동물의 배설물 등 배출오염물질 보관소
- 안락사 사체보관소 등 혐오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 수유중인 어미와 그 자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
- 아프거나 다친 동물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

㉣ 수용동물 수에 따른 면적

유기동물의 발생현황에 따르면 유기견의 70%가 소형견, 나머지 30%가 중대형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물보호소의 견사의 적정 면적은 소형견의 경우 마리당 적정견사 넓이를 0.9m ×1.2m = 1.08㎡으로 하고, 중대형견은 적정견사넓이를 1.8m × 1.8m = 3.24㎡으로 할 경우 계산된 견사총넓이에 필요한 시설인 운동장, 동물병원, 계류장, 사무실, 직원숙소 등이 설치될 공간을 견사 대비 3배를 곱하여 전체 넓이를 산출하였다.

〈표5-8〉 동물 보호시설의 요구면적 산출표

보호가능 마릿수	소형견 : 중대형견 마릿수	총 견사넓이	대지면적
50 마리	35 마리 : 15 마리	86 ㎡	258 ㎡
100 마리	70 마리 : 30 마리	173 ㎡	519 ㎡
300 마리	210 마리 : 90 마리	518 ㎡	1,554 ㎡
600 마리	420 마리 : 180 마리	1,037 ㎡	3,111 ㎡
900 마리	630 마리 : 270 마리	1,555 ㎡	4,665 ㎡
1200 마리	840 마리 : 360 마리	2,074 ㎡	6,222 ㎡
1500 마리	1,050 마리 : 450 마리	2,592 ㎡	7,776 ㎡
2000 마리	1,400 마리 : 600 마리	3,456 ㎡	10,368 ㎡

㉣ 시설기준

- 유기동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케이지의 크기가 되어야 함
- 개별사육장은 유기동물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출 것.
- 유기동물에 적정한 온도, 환기, 조명이 유지되고 양호한 위생상태가 유지되도록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바닥, 내벽, 천장 및 부속설비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위생적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구비할 것
  * 세척 및 소독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위생적으로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오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바닥, 내벽, 천장 및 부속설비는 사육동물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 사육시설은 직사광선이나 외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격리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 격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역 중인 동물들
  * 건강한 동물로부터 아프거나 다친 동물들
  * 자견 및 자묘의 격리(수유 중이지 않는다면)
  * 발정중인 암컷으로부터의 수컷 격리
  * 모든 동물로부터의 공격적인 동물들의 격리
  * 모든 동물로부터 수유중인 어미와 그 자식들의 격리
  * 섞어 놓지 않아야 하는 종들은 서로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예: 개와 고양이/ 매와 비둘기)
- 동물의 도주 및 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요건을 갖출 것.
  *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는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보호소의 주 출입문은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탈출이 빈번한 주요동물에 대해서는 울타리와 우리 바닥에 대한 설치를 아래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예: 시베리언 허스키, 진돗개 등 스피츠 견종)
    · 지붕이 없거나 지붕과 울타리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 울타

리의 끝 부분을 우리 안쪽으로 50cm 이상 40도 이상으로 기울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이 콘크리이트 구조가 아닌 우리의 경우 철망의 바닥부분을 최소한 10cm 깊이로 묻고 그 끝을 바깥쪽으로 구부려 최소한 50c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력기준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수용동물의 보호와 적정한 사육을 위해서 다음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직 직원
- 유기동물을 구조, 포획, 인수를 위한 직원(차량 운전)
- 유기동물의 진료와 검역을 위한 수의사
- 유기동물의 사육을 위한 사육직원

(사육직원은 보호동물이 배변처리와 사료급여만을 실시할 경우 소형견 100 마리당 1인 이상, 중대형견 50 마리당 1인 이상이며, 다른 역할이 추가 될 경우 사육 직원 또한 추가되어야 함)

②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 자치단체 및 동물보호감시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포획 및 구조에 대한 정보관리

㉡ 수용동물의 정보관리(종류, 품종, 성별, 나이, 특징)

㉢ 수용동물에 대한 검역 및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구충, 외부기생동물 제거,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등)

㉣ 인도, 분양, 안락사 등에 대한 정보

㉤ 인도 후 현재 체류지에 관한 정보

③ 수용된 동물의 양도

수용된 동물중에 양도가 가능한 동물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를 원하는 사람중에 성인과 반려동물을 사육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양도를 원하는 사람과 같은 주소지의 사람은 이전에 양도한 반려동물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양도한다.

또한 고양이의 양도시는 거세 후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수용동물을 양도할 시는 양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상에 해당 동물의 성격과 특징을 기재한다.

④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책무는 아래와 같다.

㉠ 포획, 구조, 신고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보관 필수

현재 자치단체마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비용 기준이 다른데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마리당 90,000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곳은 마리당 포획비를 포함하여 150,000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비를 포함하여 2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비용에는 포획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 및 고양이의 경우 포획과 신고에 의한 인수에는 인력과 장비의 차이가 나게 되며 포획비용의 책정 기준자료의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의 개 및 고양이의 경우 구입가격이 2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포획과 구조, 인수 당시의 구체적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관할 관공서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존재하는 시설과 직원 및 운영 상황 보고

운영상황이 정리된 관리보고서에는 신고된 시설에 대한 사진과 직원의 근태상황을 정리 보관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관할 관공서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기간이 경과한 동물의 적정처리

입소된 모든 유기동물은 등록사항(전자적 인식장치의 유무)을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현행 30일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수용동물은 보호시설에서 수립한 안락사 지침에 의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을 경우 수용시설에 보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타인에게 분양되어야 한다.

㉣ 안락사를 시킨 사체의 적정처리

안락사를 한 사체의 경우 입소한 데이터와 사진, 전자적인식장치의 고유번호를 대조한 사진과 사체처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자연 폐사한 동물의 사체 처리 및 기록관리

보호시설에 입소 후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사체의 경우 입소한 데이터와 사진, 전자적인식장치의 고유번호를 대조한 사진과 사

체처리업자 확인서 및 폐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동물장례업 허가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동물장례업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대략 10여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 곳당 연간 2,500 마리 이하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장례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장례업체를 통한 사체처리는 18,000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동물 사체발생수 30만 마리의 10% 이하의 수치이고 현재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소형견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발생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장례업체들은 대부분 서울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리당 장례비용이 약 15 만원에서 많게는 70 만원 정도로서 다소 고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대다수의 사육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일반가정에서 사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고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육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어 인근 야산이나 적당한 장소에 불법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토양오염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례업이 활성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법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영업중인 애완동물장례업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가 법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소유자 등록제나, 유기동물보호소 등록제를 할 경우 결국 등록된 반려동물 사망시 반려동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물장례업의 허가제가 시행되었을 때 동물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물장례업의 허가제는 꼭 필요하며 또한 동물장례업의 전국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다수의 사육

자가 이용하였을 경우 현재 소요되는 고가의 장례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많은 사육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5-9> 동물장례업 국가별 시행 현황

국가	일본	미국	유럽(프랑스)	한국
시행 유무	◎	◎	◎	×

나. 동물장례업자의 역할 및 책무

① 동물장례업자의 역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키워지던 반려동물의 사망했을 때 사육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하며, 처리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동물장례업자의 책무

사체처리업 설치와 관련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사체 이외의 것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 동물장례업 허가제 관리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 정도의 장례업체 중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개 미만이며 이 업체들도 설치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사육자들이 많아져야 불법매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동물장례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행되게 되면 사망으로 인한 등록해지(사망신고)가 관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불법매장을 근절하고, 등록과 사망신고가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동물장례업 허가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5-10> 동물장례업 허가제의 역할분담

사업내용	관리방안	역할분담	
동물장례업자 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 시설기준 마련	정부	관련법령 개정 시설기준 마련
		자치단체	관련조례 개정 제도 홍보
		장례업자	허가사항 준수

① 사체처리 반려동물의 범위

개와 고양이 등 법에서 정한 소각로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가정에서 사육되며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또는 기타반려동물로서 사망확인서가 첨부된 사체

② 동물장례업의 범위

동물 사체의 화장에 필요한 소각시설 및 해당 사체 소각 후 발생한 소골을 납골하기위한 시설

③ 동물장례업 허가절차 및 허가사항

㉠ 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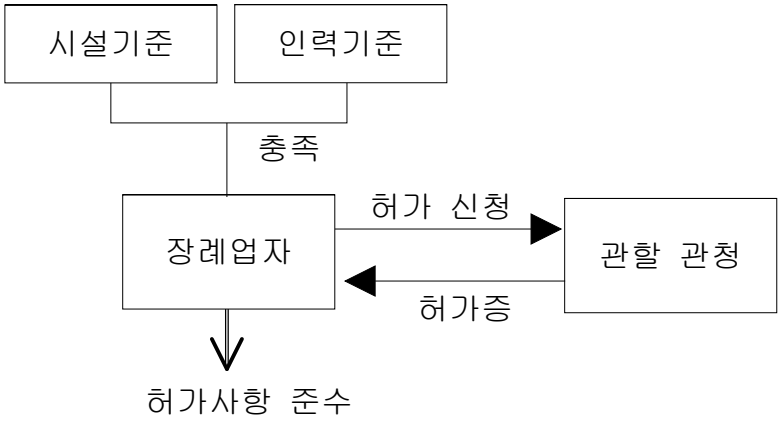

㉡ 허가사항

- 장례업체의 명칭 및 주소(법인일 경우 대표자 이름)
- 장례업의 종류
- 장례시설의 위치
- 장례시설의 규모 및 처리능력
- 첨부서류
  · 지적도, 평면도
  · 장례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할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동물장례업 변경허가

동물장례업자는 최초 신고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 해야 한다.

㉠ 변경허가 사유

- 장례업체의 명칭 및 주소

- 대표자의 변경
- 장례시설의 변경

⑤ 장례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지정

현재 시행중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지역을 준용[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동법시행령 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⑥ 장례시설의 시설기준

㉠ 화장장 및 납골시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별표 3] 1. 사설화장장 및 2.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화장로실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감시기기 부착과 감시기기의 자료는 12개월간 보관함을 의무화한다.

- 화장장
  ·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 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납골시설
  · 납골시설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장례업자의 인력보유기준

동물장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소각로 운영을 위한 환경기사

㉡ 사망확인을 위한 수의사(비상근직 가능)

㉢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관리직원은 운영, 경리 등 사무업무외에 사체의 등록사항(전자적 인식장치)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등록사항이 없는 사체의 경우는 사체인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다.

㉣ 장례절차 직원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이 겸할 수 있으며, 장례 절차를 원하는 식을 진행하는 장례식 전문직원을 말한다.

⑧ 장묘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장례업자의 장례수수료는 조사 결과 화장 비

용 및 납골당 관리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7kg 미만의 반려동물로 가정하였을 때 화장비용은 업체마다 대략 15만원 정도이이며, 납골당 관리비용은 일반형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1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조류 또는 햄스터 등 소형 동물의 화장비용(대략 6,000엔 정도)과 약 35kg 이상 대형 동물의 화장비용(대략 40,000엔 정도) 차이가 대략 7배 정도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약 10kg 정도의 반려동물을 화장할 때 대략 16,000엔 정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며, 납골당 관리비는 1년 기준으로 대략 20,000엔(업체별로 편차가 큼)정도로서 우리나라 장례업체의 두배 정도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례업체들이 사육자들로부터 받는 장례수수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래 ⑨ 항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각로의 소형화가 시행되고,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수수료가 조정된다고 보여진다.

⑨ 기타 사항

현재 소각로는 최저 처리용량 기준이 25kg/시간 미만이다.

이 수치는 정해진 기준의 3배치의 소각물을 처리했을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75kg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반려동물의 경우 고양이는 5kg 이하이고, 개의 경우도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말티즈, 요크셔테리어, 푸들, 치와와 등의 몸무게가 3kg 내외이며, 조류와 설치류의 경우는 1kg 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형소각로인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반려동물 소각을 위해서는 큰 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규모는 10kg/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1999년 8월부터 설치가 금지(폐기물관리법 제30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되어 있어 소형 소각로의 설치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해당법령에 반려동물 소각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처리용량 기준을 최저 10kg/시간 미

만 이내의 소각로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면 장례업자의 유류비 절감으로 이어져 나아가서는 반려동물 사육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5.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가. 현황 및 도입배경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반려동물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육환경에 따른 주민피해, 유기반려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각종 반려동물 관련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취급업소인 번식장, 판매소,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사육자,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 반려동물에 관련한 사항을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반려동물 관리 인력이 필요고, 따라서 반려동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관을 두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동물보호감시관의 역할 및 책무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선임된 자치단체의 직원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신규사업과 홍보사업에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
㉢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
㉣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반인에 대한 계몽 및 홍보사업 진행
㉤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사업 진행

다.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기준

동물보호감시관은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된다.

본 동물보호감시관은 전문분야이므로 해당 공무원은 채용된 뒤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 동물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 이해

6.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가. 현황 및 도입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동물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법률이 없으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도 행정적 인프라가 기타 다른 사항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관계로 민간 위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자치구와 계약하기 전에는 지역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중에 “공수의사”제도를 통하여 자치구가 특정 동물병원 수의사를 지정하여 유기동물발생시 건강진단, 보호, 안락사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현재 불충분한 동물보호 인프라를 자치구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동물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역할 및 책무

①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역할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법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과 조례가 정한 반려동물등록자, 반려동물판매업자, 유기동물보호소, 장례업자에 대하여 관할의 업소와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능률적인 새로운 안건을 동물보호의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하여 해당 부서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책무

㉠ 동물보호감시관에게 동물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언
㉡ 동물보호를 위하여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필요한 조언 및 협력
㉢ 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사육방법 개선에 대한 조언
㉣ 해당 관청 관할의 판매업소, 유기동물 보호시설, 장례업소 등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 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기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인지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호칭에서처럼 명예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덕적 객관성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기준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정한 교육을 필 한 자
- 시단위 이상 지자체 또는 행정부처로부터 동물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력
- 동물보호관련 분야 연구 경력

제 6 장

반려동물 관리 표준 조례(안)

KIIE
www.dict.or.kr

○○○시·도 동물보호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식표가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의 소유자는 그 동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 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 생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동물을 취득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2. 동물의 소재지
3. 동물의 종류
4. 동물의 생년월일
5. 동물의 모색
6. 동물의 성별
7. 동물의 이름
8. 기타 동물의 특징이 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대한 전자적인식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고유번호와 제2항의 등록사항을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확인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동물의 소유자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등록 변경)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2. 동물의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2.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3. 변경사항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증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 제1항 제3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회수하고 그 동물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물의 신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식표의 부착 등) ①법 제5조제7항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동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
2.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동물

②인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등록번호

③법 제5조제7항 하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때의 준수사항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일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행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2. 주택에서의 준수사항
 가.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없이 혼자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제6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동물 보호시설에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물의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호한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2. 포획 장소 및 시간
3. 보호 장소
4. 반환요구기한 및 절차
5. 반환요구기한 종료후의 처리방법

③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요구기한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해당 유기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⑤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동물원에 기증
2.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 분양
3.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

제7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보호시설이라 함은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을 확보한 곳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③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시설의 관리 및 감독 등) ①시장·군수 및 위탁보호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로 한다)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군수는 위탁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4.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요경비의 지급) 시장·군수는 위탁보호시설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수수료 등) ①시장·군수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0조, 제11조제1항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량(1마리/1두)
개	10㎏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비고 ①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 적용하는 때에는 동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소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청장과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7. 기타비용

가. 안락사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안락사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다.

제 7 장

결 론

KIIE
www.dict.or.kr

제 7 장 결 론

국내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중 상당수는 일부 반려동물 사육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일부 문제들은 80% 이상의 대다수 반려동물 비사육자들에게도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사육자들과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된 업체들의 편리와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제반 동물과 관련된 제도를 알기 위하여 국내 번식업자, 판매업자, 사육자, 동물병원 수의사 등과 같은 일선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장례업체, 동물보호시설을 방문하고, 외국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려동물 관련제도는 반려동물 등록제, 판매업자 등록제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시설기준 정립, 동물장례업 신고제도,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국내 반려동물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더 발전된 반려동물 관리제도로서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자와 비사육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가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내에도 반려동물 관련 개별법령 제정에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 록

부록1. 참고문헌

부록2. 해외 관련법령 및 조례

부록3. 관련단체 의견서

KIE
www.dict.or.kr

부록 1. 참고문헌

1. 국내 및 외국문헌

*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외, 2004. 7
*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진, 2004. 11
*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진, 2003. 11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2005,
* 2005 반려동물복지 국제컨퍼런스,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2005
* 『해외법률소개』 제242호, 독일 동물보호법,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11
* Planning & Running an Animal Shelter April 1992, WSPA, p7~14
* Shelter Medicine for Veterinarians and Staff, srephen zawistowski, 2004

2. 국내 관련법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개정(안)
*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철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주택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 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조례

3. 해외관련법

〔1〕 일본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 狂犬病予防法, 施行令, 施行規則
* 動物取扱業者に係る飼養施設の構造及び動物の管理の方法等に関する基準
* 日高市ペット霊園の設置等に関する条例
* 東京都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 施行規則
* 横浜市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 施行規則

〔2〕 미국

* http://www.co.clackamas.or.us/dc/laws.htm Title 5 Animals
  CHAPTERS 5.01
* Oregon TITLE 48. ANIMALS. CHAPTER 609. ANIMAL CONTROL; EXOTIC ANIMALS; DEALERS. DOGS.

〔3〕 스위스

* Tierseuchenverordnung Änderung vom23. Juni 2004

〔4〕 독일

* Richtlinien für die Führung von Tierheimen der Tierschutzvereine im Deutschen Tierschutzbund e.V., den 17.06.1995
* Hundesteuersatzung der stadt Köln vom 19.12.2003

〔5〕 영국

* Pet Animals Act 1951
* Breeding and Sale of Dogs(Welfare) Act 1999

〔6〕 호주

* The Domestic Animal Act 2000
* Animal Welfare Code of Practice No 2 - Animals in Pet Shops 15 January 2001 [reviewed 16 December 2004] Originally published in October, 1996, by NSW Agriculture

부록 2. 해외 관련법령 및 조례

1) 광견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본)

광견병 예방법 (평성 11년 개정공포)

- 이하 발췌 -

제 2 장 통상조치

(등록)

제 4 조 1.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 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생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 개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이 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시읍면장은 전항의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는, 원부에 등록하고, 그 개의 소유자에게 개의 감찰을 교부해야 한다.

3. 개의 소유자는 전항의 감찰을 그 개에게 대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의 소유자는, 개가 사망했을 때 또는 개의 소재지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개의 소재지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개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신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전 각 항에 정한 것 외, 개의 등록 및 감찰의 교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예방주사)

제 5 조 1. 개의 소유자(소유자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 이하 동일)는 그 개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매년 1회 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시읍면장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예방주사를 받았던 개의 소유자에게 주사제표를 교부해야 한다.

3. 개의 소유자는 전항의 주사제표를 그 개에게 대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광견병 예방법 시행령 (평성 12년 개정공포)

- 이하 발췌 -

(감찰의 재교부)

제 1 조의 2 시읍면장(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은 감찰을 망실하거나 또는 손상된 개의 소유자로부터 감찰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는 감찰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의 소멸)

제 2 조 시읍면장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가 사망한 취지의 신고가 있을 때는 그 개의 등록을 소멸해야 한다.

(등록의 변경 등)

제 2 조의 2 1. 시읍면장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의 소재지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취지의 신고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의 소유자의 변경 취지의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등록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시읍면장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의 소재지를 변경한 취지의 신고(해당 시읍면장의 관할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해당 시읍면장의 관할하는 구역내에 개의 소재지를 변경한 취지의 신고에 한한다.)가 있을 때는, 개의 소유자에게 개의 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이 교부한 감찰과 교환하여 감찰을 교부함과 동시에, 개의 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개의 신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읍면장은 해당 통지를 한 시읍면장에게 그 개의 원부를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사제표의 재교부)

제 3 조 시읍면장은 주사제표를 망실하거나 또는 손상된 개의 소유자로부터 주사제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는 주사제표를 교부해야 한다.

(성령에의 위임)

제 4 조 전 각조에 규정하는 것 외, 개의 등록 및 감찰의 교부 및 주사제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광견병 예방법 시행규칙 (평성 15년 개정공포)

- 이하 발췌 -

(등록의 신청)

제 3 조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2. 개의 소재지
3. 개의 종류
4. 개의 생년월일
5. 개의 모색
6. 개의 성별
7. 개의 이름
8. 전 5호 외 개의 특징이 되어야 할 사항

(원부의 기재사항)

제 4 조 법 제4조 제2항의 원부에는 전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찰의 양식)

제 5 조 법 제4조 제2항의 감찰은 , 등록번호를 기재한 별기 양식 제3에 의한다

(감찰의 재교부)

제 6 조 1. 개의 소유자는, 감찰을 망실하고,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는 그 사유를 쓰고,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감찰을 더해 30일 이내에 개의 소재지 시읍면장(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의 재교부를 신청한 후, 망실한 감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개의 소재지 시읍면장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경의 신고사항)

제 7 조 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은, 개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로 한다.

(개의 사망신고)

제 8 조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개의 사망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사망한 개의 사망 당시에 있어서의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2)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3) 사망의 연월일

2. 전항의 신고서에는 감찰 및 주사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사항의 변경의 신고)

제 9 조 법 제4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사항의 변경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3. 변경한 사항(해당사항과 관련되는 신구의 대조를 명시한 것.)

(예방주사의 시기)

제 11 조 1. 생후 91일 이상의 개(차항에 규정한 개이고,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소유된 것에 이르렀던 것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개에 대해서,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 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3월 2일 이후에 있어 이미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은 개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생후 91일 이상의 개이고, 3월 2일(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개를 소유한 것에 이르렀을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의 3월 2일) 이후에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않은 것 또는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소유한 것에

이르렀던 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개에 대해서, 그 개를 소유한 것에 이르렀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사제표의 교부)

제 12 조 1. 수의사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행했을 때는, 그 개의 소유자(소유자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 이하 같다.)에 대해서, 별기 양식 제 4 에 의한 주사제증을 교부해야 한다.

2. 개의 소유자는 전항에 규정한 주사제증을 시읍면장에 제시하고, 주사제표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3. 주사제표는 별기 양식 제 5 에 의한다.

(주사제표의 재교부)

제 13 조 1. 개의 소유자는 주사제표를 망실하고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는, 그 사유를 쓰고, 주사제증을 제시하고 또한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주사제표를 더해 시읍면장에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크랙카마스시 동물 조례(미국)

Title 5 Animals CHAPTERS 5.01 DOG LICENSING & SERVICES

- 이하 발췌 -

제 5.01 장 개 등록증 및 서비스
5.01.030 등록 : 예방접종

A. 등록증

1. 단일 개 등록증
   a. 모든 개 소유자는 생후 6개월이 지난지 30일 이내 또는 동물의 취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중 나중에 발생된 일자가 우선한다) 등록해야 한다.
   b. 크랙카마스시로 이주한 개소유자 및 기타 오레건 주 또는 주에서 발행된 현행의 개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개 월령이 6개월에 이르렀을 경우 30일 이내에 개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도시 또는 주 발행의 현행 개 등록증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크랙카마스시로의 이주 30일 이내에 소유자는 개에 대한 기술서, 등록증 번호 및 발행처, 크랙카마스 주소를 Dog service에 통보해야 한다.
2. 복수 개 등록증
   a. 자격 : 적용 조사.
      복수 개 등록증 적용에 대한 자격심사가 승인 되고 모든 개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사된 이후에, 4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한 소유자는 복수 개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복수 개 등록증을 취득한 개 소유자 및 등록증 갱신을 신청한 소유자는 조사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b. 등록증 유형개
      ⅰ. 비 영리적 복수 개 등록증 : 영리적 목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비영리적 복수 개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다.
      ⅱ. 영리적 복수 개 등록증 : 영리적 목적으로 개를 유지하는 소유자는 영리적 복수 개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다.

B. 광견병 예방접종

단일 또는 복수 개 등록증은 등록할 개에 대한 다음의 증거자료 없이는 발행되지 않는다.

1. 허가된 수의사가 발행한 등록기간이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2. 광견병 예방접종을 투여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가 진술된, 허가된 수의사가 서명한 확인서

C. 등록증 조항갱신벌금

1. 등록증은 발행일로부터 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년, 이년 또는 삼년간 유효하며 등록 기간동안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요구된다.
2. 등록증의 갱신은 등록증 만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만료일 전에 등록증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등록증이 갱신되는 시점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 식별표

1. 단일한 개 등록증이 발행된 시점에 Dog services는 무료로 식별표를 발행하여 개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관리를 벗어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에 부착되어 있도록 개목걸이 등에 고정해야 한다.
2. 복수의 개 등록증 발행 시, 소유자는 요금 납부 후 식별표를 취득할 수 있다.
3. 개 식별표 분실 시, 개소유자는 요금 납부 후 Dog services로부터 식별표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E. 등록세 면제.

1. 다음의 사항에서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a. ORS 346.680조항에 정의된 "안내견"에 부합되는 개로서, 개의 소유자가 ORS 346.680에 정의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약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Dog Services 측의 확인서를 소유자가 지참했을 경우.

b. ORS 346.680조항에 정의된 "안내견"이 되기 위해 훈련중인 모든 개. 안내견으로서의 개의 신원을 나타내는 문서를 Dog services 측에 훈련자가 제공해야 한다.

2. 관리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또는 관리자에 의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간주되는 가구의 2마리 개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50% 까지 경감시킬수 있다

3) 쾰른시 축견세 조례(독일)

쾰른시 축견세 조례 (2003년 12월 19일 제정)

- 이하 발췌 -

제 1 조 과세주체

쾰른시는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로서 축견세를 징수한다.

제 2 조 과세대상 및 과세의무

(1) 과세대상은 쾰른시계 이내에서 개인적 목적에 기여하는 자연인에 의한 개사육이다.
과세의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민등록법의 의미에서 쾰른시계이내에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성립한다.
3 개월까지 연속적인 쾰른소재 거주지에서 임시적인 부재는 과세의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자신의 세대에서 1 마리 혹은 다수의 견을 수용하고 있는 개소유자는 과세의무를 가진다. 1 개 세대에 수용된 모든 견들은 세대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수의 인명이 공동으로 1 마리 혹은 다수의 견을 사육한다면 이들 모두는 연대책임을 가진다.

(3) 1 마리의 개를 관리 혹은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혹은 시험적으로 혹은 훈련을 위해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개가 이미 쾰른에서 혹은 타 지역단체에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세금면제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세의무를 가진다.
관리, 보관 혹은 시험적인 사육 혹은 훈련을 위한 사육이 3 개월의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의무는 어떤 경우든 발생한다.

제 3 조 과세척도와 과세율

세금은 매년 각 사육되는 개를 위해 156.00 유로를 징수한다.
과세의무기한이 1 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과세의무를 부담하는 각 달을 위해 년 과세금액의 1/12 로 산정해서 부과한다.
연방사회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금이 년 60 유로로 경감되며, 이는 1 마리의 견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세금경감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첫 번째 달부터 허용된다. 경감은 12 개월 유효하며 신청에 따라 경감사유의 증명을 통해 12개월 연장된다.
세금경감을 위한 전제가 소멸되면, 이를 근거소멸 후 4 주 이내에 쾰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세금면제

(1) 세금면제는 신청에 의해 허용된다.

a) 장애인법의 규정에 따라 100 % 의 장애등급이 확인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와 도움에 기여하는 개는 세금면제가 허용된다.
이 전제는 장애인 증명서 혹은 원호처의 확정고지의 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세금면제는 단지 1 마리의 개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b) 자연인에 의해 사육되지만 정기적으로 구조견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리고/혹은 공공의 재난보호활동을 하는 구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쾰른시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구제단체에서 실행하는 훈련 그리고 시험을 완료하거나 혹은 구조견으로서 훈련 중에 있는 개는 세금면제가 허용된다.
구조견으로서 정기적인 활동은 이를 운영하는 단체에 의해 최소 1 년에 한번 쾰른시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상기 1 항에 따른 세금면제 신청서는 개의 수용 후 4 주 이내에 쾰른시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미 부과대상이었던 개는 세금면제근거사실

이 발생한 후 4 주 이내에 신청한다. 기한에 합당한 신청서 제출 경우에 세금면제는 면제사유가 발생한 첫 번째 달부터 허용된다. 기한에 합당하지 않은 신청서 제출 경우에 세금면제는 신청서 제출 다음 첫 번째 달부터 허용된다. 세대에 새로이 수용된 개를 위해 적시에 이행된 세금면제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거부회신의 통지 이후 2 주 이내에 개를 다시 처분한다면 세금은 징수되지 않는다.

(3) 세금면제 관련해서는 증명서가 발부된다. 이는 세금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개소유자를 위해서만 유효하다.

(4) 세금면제를 위한 전제가 소멸되면 소멸 후 4 주 이내에 쾰른시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제 5 조 과세의무의 시작과 종료

(1) 과세의무는 개가 세대에 수용된 첫 번째 달부터 시작된다. 소유자에 의해 사육되는 암컷에서 출산된 그리고 소유자에게서 성장한 개들의 경우에 과세의무는 개가 6 개월이 된 첫 번째 달에 시작된다. 제 2 조 3 항 2 호의 경우에 과세의무는 3 개월 기한이 넘어선 첫 번째 달에 시작된다.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쾰른시계로 개 소유자의 전입 경우에 과세의무는 전입 다음 첫 번째 달부터 시작된다.

(2) 과세의무는 개를 판매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망한 달의 경과와 더불어 종료된다.
쾰른으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로 개소유자의 전출 경우에 과세의무는 전출이 이행된 달의 경과와 함께 종료된다.
개사육의 중단 혹은 쾰른으로부터 전출 (제 8 조 2 항) 이 기한에 합당하게 신고되지 않았다면 과세의무는 쾰른시 세무서에 신고가 도착한 달의 경과와 함께 종료된다.

제 6 조 과세확정과 만기일

(1)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은 납세고지를 통해 확정된다.

확정은 새로이 변경된 납부고지의 발부시까지 유효하다.

(2) 세금은 반년마다 1 월부터 6 월까지 기간을 위해서는 4월 1일에 그리고 7 월부터 12 월까지 기간을 위해서는 10월 1일에 년간 세금금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납세고지가 통보될 때까지 세금은 1년 중 동일한 만기일에 납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과세확정 경우에 고지가 상기 (1) 에 따른 만기시점보다 1 개월이 적거나 혹은 이 시점 이후에 통지되었다면 현행 반년을 위한 세금은 확정고지 통지 후 1 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세금이 과세기한을 위해 현행 반년 전에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납부한 개를 구입하거나 혹은 이러한 개와 함께 전입한 혹은 처분, 상실 혹은 사망한 개 대신에 새로운 개를 구입한 사람은 이미 지불된 상환되지 않은 세금을 동일한 기간을 위해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과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세금의 보전과 감시

(1) 개소유자는 개 수령 후 4 주 이내에 혹은 - 자신이 사육한 암컷의 출산에서 유래한 경우 - 개가 6 개월이 지난 후 4 주 이내에 쾰른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 2 조 3 항의 경우 신고는 3 개월 기한이 초과한 달 이후 4 주 이내에 그리고 제 5 조 1 항 4 호의 경우에는 전입 후 4 주 이내에 신고가 이행되어야 한다.
신고시에는 공동 가계의 전체 구성원이 기재되어야 한다.

(2) 개소유자는 개를 판매 혹은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후 4 주 이내에 그리고 개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사망했을 경우 4 주 이내에 그리고 소유자가 쾰른에서 전출할 경우에는 전출 후 4 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개의 말소 신청과 더불어 축견세표찰은 쾰른시 세무서에 반환되어야 한다. 개의 양도로 인한 말소 신청경우에는 새로운 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6 개월 연령까지 강아지의 양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쾰른시 세무서는 납세고지와 함께 혹은 세금면제 증명서와 함께 개를 위한 축견세 표찰을 발송한다. 이 표찰은 주택 외부 혹은 소유토지 울타리 외부에서 개에 의해 보이도록 착용되어야 한다. 개소유자는 쾰른시 감독관이 요구시 유효한 세금표찰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세금표찰과 유사하게 보이는 기타 대상물들을 개에게 착용시켜서는 안된다. 세금표찰의 분실 경우에 소유자는 쾰른 세무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소유자는 이 경우에 새로운 세금표찰을 수령한다.

4) 동물방역법 (스위스)

스위스 연방 동물방역법 (2004년 6월 23일 수정 결의)

- 이하 발췌 -

2 장 : 기타동물들의 전자인식과 등록

제 16 조 개의 전자인식

1. 개들은 출산 후 3 개월 이내에 마이크로 칩으로 전자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마이크로 칩은 ISO-규격 11784 & 11785 에 상응해야 하며, 원산지와 제조사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통신설비의 제공과 유통 관련해서는 통신설비에 관한 2002년 6월 14일 제정된 조례규정들은 유보된다.

3. 전자인식과 더불어 개에 관한 다음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야 한다:

   a. 성명
   b. 성별
   c. 생년월일
   d. 견종
   e. 모색
   f. 번식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칩 장착시점에서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g. 칩을 장착하는 수의사의 성명
   h. 장착일자

4. 전자인식을 위한 칩의 장착은 오직 수의사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5. 전자인식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들은 수의사에 의해 애견소유자의 거

주지가 속해 있는 주에서 지정한 기관에 신고된다.

제 17 조 개의 등록

1. 주들은 전자인식을 위한 칩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뱅크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혹은 한 기관에 이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다. 주들은 기타 데이터들을 문서화할 수 있으며 혹은 문서화를 위임할 수 있다. 특히 주들은 애견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데이터뱅크의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마이크로 칩 번호는 숫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 수의사에게 언제든지 축견세와 관련해서 작성되는 축견등록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

4. 데이터 뱅크의 운영자는 모든 주 수의사들에게 데이터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전출하는 개들의 데이터는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제 18 조 애견증명서

1. 주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애견소유자에게 개증명서를 발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마이크로 칩 번호 혹은 문신번호, 개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뱅크 그리고 제 16 조 3 항 a-e 의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다.

2.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방역기관 그리고 주에 지정된 특정 관청에 개증명서를 제시하고 개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개정공포)

- 이하 발췌 -

제 3 장 동물의 적정한 취급

제 1 절 총칙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

제7조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생명이 있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그 동물을 그 종류, 습성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하고, 또는 보관함에 있어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로움을 가하고 또는 사람에게 폐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하고 또는 점유한 동물에게 기인한 감염성의 질병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위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3.동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한 동물이 자기의 소유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경 장관이 정한 것을 따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환경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동물 판매업자의 책무)

제 8 조 동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 판매에 관계된 동물의 구입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행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제 9 조 지방공공단체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동물이 사람에게 폐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지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 절 동물 취급업의 규제

(동물 취급업의 등록)

제10조 1. 동물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게 속한 것에 한하고 축산 농업에 관계된 것 및 시험 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의 용도로 타 정령으로 정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고 또는 보관하고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절 및 차절에 있어 동일) 의 취급업 동물의 판매 (중개인 또는 대리를 포함한다. 차항에 있어 동일, 보관, 대출, 훈련, 전시 (동물과의 접촉 기회의 제공을 포함한다. 차항에 있어 동일)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취급을 업으로서 행한 것을 말한다. 이하「동물 취급업」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도도부현지사 (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 (이하「지정 도시」라고 한다.) 에 있어서는 그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절에 있어 동일) 에게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환경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이것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소마다 동물 취급 책임자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의 성명
4) 그 운영할려고 하는 동물 취급업의 종류별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또는 전항의 정령으로 정한 취급의 종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 및 그 종류별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실시의 방법
5) 업으로 다루는 동물의 종류 및 수
6)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한 시설 (이하 이 절에 있어「사육시설」이라고 한다.) 을 설치되어 있을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
   ① 사육 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③ 사육 시설의 관리의 방법
7) 그 밖에 환경성령으로 정한 사항

(등록의 실시)

제11조 1. 도도부현지사는 전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등록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전조제2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및 제５호에 언급한 사항 및 등록 년월일 및 등록 번호를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의 거부)

제12조 1. 도도부현지사는 제10조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에 관계된 동항 제４호에 언급한 사항이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 그 밖에 동물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 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동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에 관계된 동항 제6호 ② 및 ③에 언급한 사항이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육 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속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고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흠결이 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 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않는 것
2)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해)로부터 ２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최소되고 그 처분이 있던 날(해)로부터 ２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4) 제10조 제１항의 등록을 받았던 자 (이하「동물 취급 업자」라고 한다.) 로 법인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그 처분이 있던 날 30일 전 이내에 그 동물 취급 업자의 임원이였던 자로 그 처분이 있던 날(해)로부터 ２년을 경과하지 않는 것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받고 그 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자
6) 법인이고 그 임원 내에 전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자가 있는 것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의 갱신)

제13조 1. 제10조제1항의 등록은 5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않는다면, 그 기간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제10조제2항 및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갱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의 갱신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있어 동항의 기간 (이하 이 조에 있어「등록의 유효 기간」이라고 한다.) 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는 종전의 등록은 등록의 유효 기간 만료 후도 그 처분이 되기까지의 사이는 또한 그 효력을 갖는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 등록의 갱신이 있을 때는 그 등록의 유효 기간은 종전의 등록의 유효 기간만료의 날(해)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한다.

(변경의 신고)

제14조 1. 동물 취급 업자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언급한 사항을 변경하고, 또는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 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동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언급한 사항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동물 취급 업자는 제10조 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언급한 사항에 변경 (환경 성령으로 정한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 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던 경우에 준용한다.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의 열람)

제15조 도도부현지사는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를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폐업등의 신고)

제16조 1. 동물 취급 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각호에 정한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법인이 병합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한 임원이였던 자

3) 법인이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에 의하고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4) 법인이 병합 및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하고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5) 그 등록에 관계된 동물 취급업을 폐지한 경우, 동물 취급 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동물 취급 업자이었던 법인을 대표한 임원

2. 동물 취급 업자가 전항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때는 동물 취급 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등록의 말소)

제17조 도도부현지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그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는 해당 동물 취급 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지의 게시)

제18조 동물 취급 업자는 환경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사업소마다 공중의 찾기 쉬운 장소에 성명 또는 명칭, 등록 번호 그 밖의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 취소 등)

제19조 1. 도도부현지사는 동물 취급 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또는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물 취급 업자의 등록을 받았을 경우

2) 그 자가 행한 업무의 내용 및 실시의 방법이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 그 밖에 동물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환경 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자의 사육 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의 방법이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사육 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된 경우

5)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환경 성령에의 위임)

제20조 제10조로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 동물 취급 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

(기준 준수 의무)

제21조 1. 동물 취급 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의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 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부현 또는 지정 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상의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적, 사회적 조건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로 전항의 기준에 대신하는 동물 취급 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동물 취급 책임자)

제22조 1. 동물 취급 업자는 사업소마다 환경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해당 사업소에 관계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물 취급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동물 취급 책임자는 제12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 해당한 자 이외의 자가 아니면 안된다.

3. 동물 취급 업자는 환경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동물 취급 책임자에게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도도부현지사가 행한 동물 취급 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연수를 말한다.)를 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고 및 명령)

제23조 1. 도도부현지사는 동물 취급 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등을 개선해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동물 취급 업자가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도도부현지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던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24조 1. 도도부현지사는 제10조로부터 제19조까지 및 전3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 동물 취급 업자에 대하여 사육 시설의 상황, 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고 보고를 구하고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동물 취급 업자의 사업소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고 사육 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한 직원은 그 신분을 가리키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5)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평성 18년 개정공포)

- 이하 발췌 -

(등록의 신청 등)

제2조 1. 법 제10조제2항의 동물 취급업의 등록의 신청은, 양식 제1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0조제2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

2)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원)가 법 제 12조제1항 제1호로부터 제 5 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3) 사업소 마다 근무하는 동물 취급 책임자가 법 제 12조제1항 제1호로부터 제 5 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4) 다음에 언급하는 설비 등의 배치를 분명히 한 사육 시설의 평면도 및 사육 시설 부근의 배치 약도(사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한정한다.)

① 케이지 등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구니, 수조 등의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조명 설비(영업 시간이 낮시간뿐인 등 해당 설비의 필요가 없는 사육 시설을 제외한다.)

③ 급수 설비

④ 배수 설비

⑤ 세척 설비(사육 시설, 설비, 동물 등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소독 설비(사육 시설, 설비 등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 분무 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⑦ 오물, 잔재 등의 폐기물의 집적 설비

⑧ 동물의 시체의 일시 보관 장소

⑨ 먹이의 보관 설비

⑩ 청소 설비

⑪ 공조 설비(옥외 시설을 제외한다.)

⑫ 차광을 위한 또는 풍우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케이지등이 모두 옥내에 있는 등 해당 설비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⑬ 훈련장(사육 시설에 있어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업(동물의 훈련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한정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신청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영업의 개시 연월일

2) 법인에 있어서는,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사실

4) 사업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 고객에 대해 적정한 동물의 사육 및 보관의 방법 등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또는 동물을 취급하는 직원의 이름

5.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등록을 했을 때는 신청자에 대해 양식 2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6. 동물 취급 업자는 등록증을 망실하거나 혹은 그 등록증이 멸실 했을 때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신고를 했을 때는 등록을 받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7.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의 신청은, 양식 제3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8.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망실했을 때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6항의 신청을 했을 경우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9.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에 언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 소멸한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인 자 또는 파산 관재인 혹은 청산인)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는, 그 날(등록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해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등록증을 그 교부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등록이 삭제되었을 때.

2) 법 제 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되었을 때.

3)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에 망실한 등록증을 발견하거나 또는 회복했을 때.

(등록의 기준)

제3조 1. 법 제 12조제1항의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보관 유지 그 외 동물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건물 및 이것들과 관련되는 토지에 관하여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
2) 판매업(동물의 판매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을를 영위하려고 하는 자 및 대출업(동물의 대출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에 있어서는, 양식 제일 별기에 의해 사업의 실시의 방법을 명확히 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제8조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내용에 적합하고 있는 것.
3) 사업소 마다, 한명 이상의 상근의 직원이 해당 사업소에 전속의 동물 취급 책임자로서 배치되어 있는 것.
4) 사업소 마다 고객에 대해 적정한 동물의 사육 및 보관의 방법 등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또는 동물을 취급하는 직원으로서 다음에 언급하는 요건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
   ① 영위하려고 하는 동물 취급업의 종별 마다 별표에 정하는 종별과 관련되는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
   ② 영위하려고 하는 동물 취급업의 종별과 관련되는 지식 및 기술에 대해 1년 이상 교육하는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있는 것.
   ③ 공평성 및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실시하는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서 영위하려고 하는 동물 취급업의 종별과 관련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의 증명을 얻고 있는 것.
5) 사업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 고객에 대해 적정한 동물의 사육 및 보관의 방법 등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또는 동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전호①로부터 ③까지 언급하는 요건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6) 사업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비추어 사업에 제공하는 동물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육 시설을 갖고 또는 영업의 개시까지 이것

을 설치할 전망이 있는 것.

2. 법 제 12조제1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육 시설의 구조, 규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육 시설은, 전조제2항 제4호 ①부터 ⑬까지 언급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것.
2) 쥐, 파리, 모기 등 그 외의 위생 동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3) 마루, 내벽, 천정 및 부속 설비는 청소가 용이한 등 위생 상태의 유지 및 관리가 하기 쉬운 구조인 것.
4) 사육 또는 보관을 하는 동물의 종류, 습성, 운동 능력, 수 등에 따라 그 도주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인 것.
5) 사육 시설 및 이것에 대비하는 설비 등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규모인 것.
6) 사육 시설은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과 관련되는 작업의 실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
7) 사육 시설에 구비하는 케이지 등은, 다음에 언급하는 대로인 것.
   ① 내수성이 없기 때문에 세척이 용이하지 않은 등 위생 관리상 지장이 있는 재질을 이용하지 않은 것.
   ② 바닥은 분뇨 등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인 것.
   ③ 측면 또는 천정은 항상 환기가 확보되고 또한 케이지 등의 내부를 외부로부터 볼 수 있는 구조인 것. 다만, 해당 사육 또는 보관과 관련되는 동물이 부상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사육 시설의 마루 등에 확실히 고정하는 등 충격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조치를 강구하는 것.
   ⑤ 동물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 구조 및 강도인 것.
8) 구조 및 규모가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것이 아닌 것.

(등록의 갱신)

제4조 1. 법 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의 신청은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월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사이(이하 이 조에 대해 「갱신 기간」이라고 한다.)에 양식 4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2이상의 동물 취급업의 등록을 받고 있는 자이며, 해당 2이상의 등록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것(차항에 대해 「갱신 기간내 등록」이라고 한다.)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동물 취급업의 등록과 관련되는 갱신 기간 전의 갱신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갱신 기간전의 등록의 갱신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갱신 기간 전에 등록의 갱신이 된 동물 취급업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갱신 기간내 등록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갱신 기간내 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4. 제2조 제5항으로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 13조제2항의 등록의 갱신에 대하여 준용한다.

(변경의 신고)

제5조 1. 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는, 법 제10조제2항 제4호에 언급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식 제5에 의한 신고서를,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식 제6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의 각 호에 언급한 것으로 한다.

1) 판매업자(등록을 받아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출 업자(등록을 받아 대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0조제2항 제4호에 언급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양식 제일 별기에 의해 업무의 실시의 방법을 명확히 한 서류

2)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서류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7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법 제14조제2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육 시설의 규모의 증대이며 그 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법 제10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했을 때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했을 때. 이 호 및 다음호에 대해 같다.)(으)로부터 통산 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의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것

2) 케이지 등 , 세척 설비, 소독 설비, 오물, 잔재 등의 폐기물의 집적 설비, 동물의 시체의 일시 보관 장소, 먹이의 보관 설비, 청소 설비, 공조 설비 및 훈련장과 관련되는 변경이며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법 제10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로부터 합산하고, 해당 설비 등을 갖추는 사육 시설의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것
   ① 설비 등의 증설
   ② 설비 등의 배치의 변경
3) 조명 설비 또는 차광을 위해 혹은 풍우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증설 및 배치의 변경
4) 제2조제2항제4호로 내거는 설비등과 관련되는 변경이며, 현재의 설비 등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설비 등의 개설인 것
5) 사육 시설의 관리의 방법의 변경

5. 법 제14조제2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
2) 법 제10조제2항제 3 호에 언급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2조제2항제 3 호에 규정하는 서류
3) 법 제10조제2항제6호 ① 또는 ②에 언급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임원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서류

6.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는 변경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전항의 서류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폐업등의 신고)

제6조 법 제 16조제1항의 신고는, 양식 제8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유효기간내에 있는 등록과 관련되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것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지의 게시)

제7조 1. 법 제18조의 표지의 게시는, 양식 제9에 의해,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사업소에 있어서 고객의 출입구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 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울러 양식 제10에 의해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식별장을, 고객과 접하는 모든 직원에게 대해서 그 흉부 등 고객으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동물 취급 업자의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과 관련되는 동물 취급업의 종별
4) 등록 번호
5) 등록의 연월일 및 유효기간의 만료일
6) 동물 취급 책임자의 성명

(준수 기준)

제8조 1. 법제21조제1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으로 내거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이유 등을 마치고, 성체가 먹는 먹이와 같은 먹이를 자력으로 먹을 수 있게 된 동물(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을 판매에 제공하는 것.
2) 판매업자 및 대출 업자에 있어서는 사육 환경의 변화 및 수송에 대해서 충분한 내성이 갖춰진 동물을 판매 또는 대출에 제공하는 것.
3) 판매업자 및 대출 업자에 있어서는 2일 이상 그 상태(설사, 구토, 사지의 마비 등 외형상 분명한 것에 한정한다.)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동물을 판매 또는 대출에 제공하는 것.
4)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그 생리, 생태, 습성 등에 일치하는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에 임하고 사전에 다음에 언급하는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 대해서 문서(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를 교부해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문서를 수령했던 것에 대해 고객에게 서명 등에 의한 확인을 실시하게 하는 것. 다만, 동물 취급 업자를 상대방으로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②부터 ⑱까지 언급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설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① 품종 등의 명칭
   ② 성 성숙시의 표준 체중, 표준 체장 그 외의 몸의 크기와 관련되는

정보

③ 평균수명 그 외의 사육 기간과 관련되는 정보

④ 사육 또는 보관에 적절한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⑤ 적절한 급이 및 급수의 방법

⑥ 적절한 운동 및 휴양의 방법

⑦ 주된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증 그 외 해당 동물이 걸릴 우려의 높은 질병의 종류 및 그 예방 방법

⑧ 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의 방법 및 그 비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

⑨ ⑧에 언급한 것의 외 질서 없는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불임 혹은 거세의 조치를 불가역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⑩ 유기의 금지 그 외 해당 동물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내용

⑪ 성별의 판정 결과

⑫ 생년월일(수입 등이 된 동물로서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및 수입 연월일 등)

⑬ 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의 실시 상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

⑭ 생산지 등

⑮ 소유자의 이름(자기의 소유하지 않는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해당 동물의 병력, 백신의 접종 상황 등

⑰ 해당 동물의 부모 및 동복자에 관련되는 유전성 질환의 발생 상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하고 또한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에 의해도 아는 것이 곤란한 것을 제외한다.)

⑱ ①부터 ⑰까지 언급하는 것 외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사항

5)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계약에 임하고 사육 또는 보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 등을 실시한 동물에 대해서 수의사가 발행한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등과 관련되는 증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 또한, 해당 동물의 구입처로부터 받은 질병 등의 치료, 백신의 접종등과 관련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아울러 교부하는 것.

6) 대출 업자에 있어서는 대출을 하려고 하는 동물의 생리, 생태, 습성 등에 일치하는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에 임하고 사전에 다음에 언급하는 그 동물의 특성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① 품종 등의 명칭
   ② 사육 또는 보관에 적절한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③ 적절한 급이 및 급수의 방법
   ④ 적절한 운동 및 휴양의 방법
   ⑤ 주된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증 그 외 해당 동물이 걸릴 우려의 높은 질병의 종류 및 그 예방 방법
   ⑥ 유기의 금지 그 외 해당 동물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내용
   ⑦ 성별의 판정 결과
   ⑧ 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의 실시 상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정한다.)
   ⑨ 해당 동물의 백신의 접종 상황
   ⑩ ①부터 ⑨까지 언급하는 것 외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사항
7) 제4호에 언급한 판매와 관련되는 계약시의 설명 및 고객에 의한 확인 및 제6호로 내거는 대출과 관련되는 계약시의 정보 제공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양식 제11에 의해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이것을 5년간 보관하는 것.
8) 전 각 호로 내거는 것 외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에 관계되어 환경대신이 정하는 세목을 준수하는 것.

(동물 취급 책임자의 선임)

제9조 1. 법제22조제1항의 동물 취급 책임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 제4호 ①부터 ③까지 언급한 요건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것.
2) 사업소의 동물 취급 책임자 이외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에서 얻은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

제10조 1. 도도부현 지사는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 장소 등을 등록된 동물 취급 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최의 통지를 받은 동물 취급 업자는 통지의 내용을 선임한 모든 동물 취급 책임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동물 취급 업자는 선임한 모든 동물 취급 책임자에게 해당 등록과 관련되는 도도부현 지사가 개최하는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를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도도부현 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다른 도도부현 지사가 개최하는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를 받게 하는 것으로써 이것에 대신할 수 있다.

1) 일년에 1회이상 받게 하는 것.

2) 1회당 3시간 이상 받게 하는 것.

3) 다음에 언급하는 항목에 대해 받게 하는 것.

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조례를 포함한다.)

② 사육 시설의 관리에 관한 방법

③ 동물의 관리에 관한 방법

④ ①부터 ③까지 언급한 것 외 동물 취급업의 업무의 실시에 관한 것.

6) 반려동물 법령 1951(영국)

반려동물 법령 1951 (Pet Animals Act 1951)

- 이하 발췌 -

1절. 펫샵의 면허 발급

(1) 이 법령의 조항에 따라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의 권한 하 에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펫샵을 운영할 수 없다.

(2) 모든 지역 당국은, 현재 펫샵 소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의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적용 규칙과 당국에 의해 결정된 요금 지불에 따라, 적용 사례에서 구체화되고, 면허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지역의 점포에 펫샵을 소유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해 줄 수 있다.

(3) 지역에서 누군가가 펫샵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당국은 특히(단, 다른 근거로 면허 발급을 취소한다던가 하는 편견은 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켜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a) 동물들은 언제나 적절한 크기, 온도, 밝기, 통풍, 청결함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b) 동물들은 적절한 음식과 마실 것이 주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 되어야 한다.

(c) 포유동물인 동물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팔리지 말아야 한다.

(d) 동물들 간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모든 정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 화재나 다른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한 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당국은 이와 같은 조건들을 면허에 표기하되, 면허를 발급했을 경우 (a)에서 (e)까지의 모든 또는 몇몇의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역 당국의 면허 발급 거부, 혹은 그러한 면허가 주어지는 조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즉결재판권으로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면허 혹은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5) 그와 같은 면허는 (지원자의 필요조건에 따라) 발급 받은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발급 일에 면허가 개시되며, 후자의 경우 다음 해의 첫날에 발효된다.

(6) 아래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면허는 그 해 말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 만기 된다.

(7) 이 부분의 (1)절하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유죄가 성립된다. 또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령에 따라 면허가 주어지는 조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이 성립된다.

(8) (스코틀랜드에 적용된다)

2절. 거리에서 반려동물의 판매

거리나 공공장소의 어떤 부분, 혹은 시장의 가판이나 수레 등에서 동물을 파는 영업을 하는 것은 위반 행위가 된다.

3절. 반려동물의 어린이에게의 판매

12살 이하라고 인지하고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판매자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

4절. 펫샵의 조사

(1) 지역 당국은 관리나 수의사 혹은 개업 수의사가 그 지역의 유효한 법령의 조항 하에 주어진 면허를 갖고 있는 어떤 점포도 (동물들 사이의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명시하는 주의사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절에 따라 권리를 부여 받은 어떤 사람도 요구될 경우 언제라도 점포에 들어가서 법령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점포와 그곳의 동물 등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의도적으로 점포내의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나 조사를 막거나 늦추려고 하는 사람은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점포의 조사. 이 법령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조사관은 지역 당국에 이 사실을 전달하여 이 절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탐색의 권리는 이 법령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만 한한다. 처음으로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절 하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점포를 갖고 있을 수 없다

7절. 해석

(1) 펫샵 보유에 대한 이 법령의 조건들은 이 절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반려동물로서의 동물들을 판매하는 영업의 모든 종류(개인 집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자나 다른 사람에게 영업의 과정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면 그런 점포에 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제조건-

(a) 자신만이 소유하거나, 자신이 번식시킨 순종 동물(pedigree animals)들의 판매, 혹은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동물의 자식을 판매하는 것 만이라면 펫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순종 동물의 사육 영업을 행함과 동시에 반려동물로써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당국에 의해 그에 의해 판매되는 동물들(그에 의해 번식된 순종 동물이 아닐 경우에)이 적절한 경우 브리딩이나 쇼 출전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런 목적으로 획득된 동물이지만, 기존 용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명이 된 경우에, 지역 당국은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가 먼저 언급된 영업만을 목적으로 펫샵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시할 수 있다.

(2) 이 법령에서 반려동물로서 동물을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해석된다. 즉-

(a) 고양이와 개에 대해, 이와 같은 조건들은 경우에 따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가정 내에서 키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들은 경우에 따라 관상용으로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개의 번식과 판매(복지) 법령 1999(영국)

개의 번식과 판매(복지) 법령 1999
(Breeding and Sale of Dogs(Welfare) Act 1999)

- 이하 발췌 -

1절. 개 번식장 설립 면허

(1) 이 법령에 따라 발급 받은 면허의 권한 하를 제외하고는 개 번식장을 소유할 수 없다.

(2) 모든 지역 당국은 다음 (a)에서 (f)까지와 같은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사람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적용-

(a) 이 법령 하에 개 번식장을 갖을 수 있는 자격

(b) 반려 동물 법령 1951 (Pet Animals Act 1951) 하에 펫샵을 가질 수 있는 자격

(c) 취소

(d) 취소

(e) 동물 보호 (수정안) 법령 1954 하에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f) 동물 보호소 설립 법령 1963 하에 동물을 맡을 수 있는 자격

-하고, 지역 당국이 결정하거나 미리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후에, 그 사람에게 적용례에 명시된 지역의 점포에서 면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개 번식장을 설립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해줄 수 있다.

(2A) 점포에 관해 이 법령 하에 면허를 발급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을 경우-

1. 이 법령 하의 면허가 신청자에게 이전에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수의사나 개업 수의사, 그리고 당국의 관리가 점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2. 다른 경우, 당국은 수의사나 개업 수의사 혹은 당국 관리(혹은 둘 다)가 점포의 조사를 하도록 한다.

(2B) (2A)의 조항에 의해 조사가 행해질 경우, 지역 당국은 점포, 신청자, 그리고 그 외 관련 사항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수배하고 면허를 발급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리포트를 고려한다.

(3) 요약-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4) 점포에서 어떤 사람이 개 번식장을 보유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할 것인지 결정할 때, 지역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한다(단, 다른 근거로 면허를 허가하지 않는 재량권은 불허)

(a) 개들은 언제나 건물, 숙소 크기, 거주자(견)의 수, 운동 시설, 온도, 밝기, 통풍, 청결성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있어야 한다.

(b) 개들에게는 적절한 음식, 음료, 침구가 주어져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 되어야 한다.

(c) 개들 사이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화재나 다른 위급 상황에서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 번식장에서/으로 옮겨질 때 적절한 음식, 음료, 침구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f) 1년 이하의 암캐는 교배를 해서는 안된다.

(g) 각 6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h)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i) 규정에 의한 규격 서류에 정확한 기록이 점포에 남겨져야 하며, 지역 당국이나 점포를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수의사/개업 수의사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면허가 주어질 경우 면허에 이와 같은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하부 절의 (a)에서 (l)까지의 문장에 명시된 모든 사항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절.

(1) 인가 번식장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a) 인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스코틀랜드의 사육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를 판매

(b) 인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스코틀랜드의 사육장의 주인이 아

닌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다시 개를 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 판매

(c) 인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스코틀랜드의 사육장의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8주가 되지 않은 개를 판매

(d) 허가 받은 번식장에서 태어나지 않은 개를 허가 받은 번식장, 펫샵, 허가 받은 스코틀랜드의 사육장의 주인에게 판매

(e) 배달 시 ID 태그나 뱃지가 달린 칼라를 하고 있지 않은 개를 인가 번식장, 펫샵, 인가 스코틀랜드의 사육장의 주인에게 판매

(2) 스코틀랜드에 적용

(3) 인가 펫샵의 주인은 그에게 배달 될 당시에는 ID 태그나 뱃지가 달린 칼라를 하고 있었던 개를 그가 판매하는 사람에게 배달 시 ID 태그나 뱃지가 달린 칼라를 착용 시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8) 펫샵에 관한 규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Animal Welfare Code of Practice No 2 - Animals in Pet Shops

- 이하 발췌 -

1. 서문

1.1 이 규약은 펫샵에 있는 동물관리를 위한 표준을 마련한다.
1.2 이는 소매를 통해 동거 목적으로 팔리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쥐, 생쥐, 새, 물고기 및 기타 척추동물들에 대한 복지에 적용된다.

2. 관리 책임

2.1 애완동물 가게의 관리자는 다음사항을 책임진다.
(a) 동물 보호시의 물리적, 행동적,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편의시설 제공
(b) 사람, 여타 동물, 해로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c) 쉬기, 서기, 펴기, 수영하기, 날기 혹은 공간에서 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의 제공
(d)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음식과 물의 충분한 제공
(e) 질병, 스트레스, 상처로부터의 최대한의 보호
(f) 질병 및 상해시 신속한 수의사 및 적합한 처치의 제공
(g) 위생적인 장소 및 건강의 유지
(h) 동물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의 배식, 배수, 점검에 대한 검사
(i) 모든 펫샵 직원에 대한 검사
(j) 적합한 기록의 조사 및 유지

3. 동물 사육공간

3.1 펫샵의 위치
펫샵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및 상해를 유발할 지나친 소음 또는 공해

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3.2 펫샵의 구조

3.2.1 동물우리는 상해, 질병, 도난 혹은 탈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3.2.2 동물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2.3 동물우리는 청소, 급식, 급수 및 정기검사가 용이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3.2.4 동물우리의 딱딱한 표면은 청소, 살균이 용이토록 도장되어야 한다. 무독 페인트만이 동물우리에 사용될 수 있다.

3.3 온도

3.3.1 주변온도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냉온방은 필요에 따라 어린 동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3.2 동물우리는 직사광선이 내리쬘 때 적절한 그늘을 마련해줘야 한다.

3.3.3 동물우리는 외풍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다.

3.4 소음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크고 갑작스런 소음은 차단되어야 한다.

3.5 조명

3.5.1 내부조명의 지속 및 강도는 자연조건에 가깝도록 해야 한다.

3.5.2 조명은 동물의 검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3.5.3 조명이 지나친 열을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4 동물우리는 밤의 가게 조명이 잔잔해질 때 지나친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다.

3.6 환기

환기조건은 습기와 외풍을 피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 유해 냄새를 최소화해야한다.

3.7 안전

3.7.1 부지는 안전해야한다. 동물우리 바깥은 안전문 혹은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7.2 바깥의 입구는 모두 동물의 탈출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해충의 출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3.7.3 모든 동물우리는 안전하게 묶여지거나 잠궈질 수 있어야 한다.

3.7.4 적힙한 소방설비가 즉시 사용가능해야 하며 훈련 실습된 직원이 필

요에 따라 이용가능해야 한다. 비상시 그 부지로부터의 신속한 동물이동이 가능토록 준비되어져야 한다.

4. 위생

4.1 청소 및 소독

4.1.1 동물우리의 주변 및 잠궈진 설비는 반드시 질병예방 및 동물복지를 위해 깨끗이 유지되어야 한다.

4.1.2 동물우리는 반드시 전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4.1.3 모든 동물우리(수족관 제외)는 필요에 따라 일주일 한번 이상 자주 살균 처리되어야 한다.

4.1.4 위생/살균 화학약품 및 물질은 동물들의 적합성, 안전 및 효율성을 고려해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 사용은 반드시 판매자의 지시서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

4.2 해충관리

4.2.1 벼룩, 파리, 기생충, 모기 및 야생 설치류를 포함한 해충은 통제되어야 한다.

4.2.2 직원 및 동물의 보건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은 해충관리를 이행하기 전에 검색되어져야 한다.

4.2.3 해충관리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농약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진 것이어야 하며 판매자의 지시서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

배설물, 침구, 음식 폐기물 및 죽은 동물은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권한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5. 관리

5.1 동물보호

5.1.1 동물들은 여타 동물 혹은 사람의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1.2 다른 동물들은 함께 주거해서는 안된다.(조화가능한 종들 제외)

5.1.3 여타 동물들의 존재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동물들은 시각적/후각적 접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야 한다.

5.1.4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질병 및 상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5.2 기록 유지

적합한 기록은 다음사항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a) 동물의 습득, 처분

(b) 동물의 질병, 사망

(c) 수의사 처리

(d) 관리를 위한 동물의 이동

5.3 직원

5.3.1 모든 직원은 동물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동물관리의 기술전공 자격과 같은 정식 훈련을 장려한다.

5.3.2 직원들은 보호중인 각 동물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건강 관리

6.1 건강 체크

6.1.1 모든 동물은 건강 및 복지 모니터링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번 검사되어야 한다.

6.1.2 체크하는 사람은 모든 동물의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먹기

마시기

배변

방뇨

정상적인 행동

질병 혹은 스트레스의 표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6.1.3 건강상의 변화는 적합한 조치를 위해 책임자에게 바로 보고되어야 한다.

6.1.4 새로이 소개된 동물들은 기존의 동물들과 섞지 말아야 한다.

6.2 수의 관리

6.2.1 애완동물 가게 관리자는 동물들을 돌보고, 질병예방책을 조언할 수 있는 수의사와의 연락책을 수립해야 한다.

6.2.2 관리자와 직원들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질병에 대한 징후에 익숙해야 한다.

6.2.3 질병 혹은 상해의 징후가 관찰될 때 개별동물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꺼내야 한다.

6.2.4 아픈 동물에게 적당한 수의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6.2.5 상해나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들은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없다.

6.2.6 아프거나 상해가 있는 동물들은 건강한 동물들로부터 고립되어야 한다.

6.2.7 불명확한 질병 혹은 죽음의 경우 수의학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6.2.8 내외부 기생충은 수의학적 충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6.2.9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새끼 동물들은 적합한 시설에 보호되어야 하며, 인공사육에 전문기술이 사용가능하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동물은 판매될 수 없다.

6.3 안락사

6.3.1 동물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가 실질적이지 않고 성공저이지 못하다면 동물은 인도적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 (안락사)

6.3.2 고양이와 개의 안락사는 오직 수의사에 의해 실행된다.

6.3.3 다른 종의 경우, 유자격자가 안락사를 수행하며 수의사의 충고를 따른다.

7. 음식과 물

7.1 동물의 연령과 종자에 따라 특수 요구를 인식하고, 우수한 건강과 생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 받아야 한다.

7.1.1 음식은 변질을 예방하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7.2 급식

7.2.1 건강하게 발육된 동물들은 하루에 한번 이상 급식되어야 한다.

7.2.2 강아지와 고양이는 하루에 세 번 이상 급식되어야 한다.

7.2.3 다른 종의 건강한 어린 동물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급식되어야 한다.

7.2.4 아픈 동물들은 수의학적 충고에 따라 급식되어야 한다.

7.3 음식과 물 용기는 견고, 무독성, 세척용이, 소독용이 해야 한다. 용기는 동물들이 빨리 이용가능해야 한다. 엎지르거나 오줌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놓여져야 한다.

7.4 상한 음식은 없애야 한다.

7.5 신선한 물은 종에 따라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 혹은 철제 용기로부터 언제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8. 판매 이후 관리

8.1 '보증' 방침의 채택을 강력히 권장하고 다음사항의 포함을 권유한다.

예를 들어, 수의사 증명에 기초한 '판매계약취소보증제도' 기간

예를 들어, 난소제거 증빙 발부에 의한 개와 고양이의 난소제거 촉진

미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8.2 구매시, 고객은 구매동물 관리에 대한 적합한 서면 정보를 받아야 한다. 이 정보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동물을 위한 일반적 주의사항, 주거, 관리 요구사항

식품

법적 책임 및 등록

예방접종, 난소제거 및 기생충 관리

9. 운반

9.1 운반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9.2 팔린 모든 동물은 고객에게 전달될 때 박스로 혹은 안전하게 가둬진다. 운반되는 우리는 동물이 돌아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동물이 운반 중 외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 안에 운반되어야 한다.

9.3 동물들은 극도의 온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4 음식 및 물은 운반되는 시간동안 공급되어져야 한다.

9.5 동물용기는 운반, 흔들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이여야 한다. 적합한 빛과 통풍이 공급되어야 한다.

9.6 위탁자와 수탁자는 운반자와 함께 동물의 출발 및 도착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지연 및 취소시 운반자는 이동시의 동물의 안녕을 확인해야 한다.

9.7 동물이 운반되어지는 용기는 선명하게 라벨이 붙여져야 한다. 출발 일자, 시간은 물론 위탁자와 수탁자계약의 세부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9.8 항공운반시 IATA기준을 따라야 한다.

9.9 동물운반의 더욱 상세한 정보는 “동거동물 운반점의 주의 및 관리”라 제목 붙여진 이 시리즈의 출판물을 참고하기 바람.

11. 개와 고양이에 대하 특별 요구사항

11.1 8주 이내의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는 판매될 수 없다.

11.2 개는 최근의 백신접종 증명과 함께, 디스템퍼, 간염, 파르보바이러스의 백신접종 없이는 판매될 수 없다.

11.3 고양이는 최근의 백신접종 증명과 함께, 고양이 전염성 장염 및 고양이 호흡질병의 백신접종 없이는 판매될 수 없다.

11.4 개와 고양이는 이 규약 섹션7에 따라 건강을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질병징후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콧물이 나오는 코
눈물이 나고 충혈된 눈
연이은 재채기
기침
구토
심한 설사
절뚝거림
신체부위의 출혈 또는 팽창
서는것, 방뇨, 배변 불가
식욕손실
체중감소
뚜렷한 통증
비틀거림 혹은 경련
잔뜩 빠지는 털

11.5 우리바닥은 신속히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한 흡수가능 물질을 깔아야

한다. (예, 신문)

11.6 고양이는 판매용 고양이깔짚, 톱밥, 대팻밥, 모래 혹은 분쇄된 종이와 같이 적당한 깊이의 충분한 깔것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깔짚용기는 매일 체크하고, 퍼내고 새로 깔거나 교환해야 한다. 모든 깔짚은 젖거나 소독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교체되야 한다.

11.7 침구는 제공되어야 한다. 깨끗해고 자주 교환해야 한다.

11.8 개, 고양이, 강아지, 새끼 고양이는 종, 종족, 연령에 적합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영양학적으로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11.9 다양한 음식이 공급되어야 한다. 통조림 및 마른 음식이 주로 주요식품이 되겠지만 신선한 고기 및 생선이 식성 까다로운 동물들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11.10 어른 개와 고양이는 매일 먹어야 한다. 임신, 수유중인 동물들, 6개월내의 강아지, 8개월내의 고양이는 하루에 두 번씩 먹여야 한다.

11.11 음식은 위생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깨끗하고 엎질러지지 않는 용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11.12 음식은 적합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예, 마른 음식은 설치류가 없는 곳, 신선한 고기는 냉장된 곳.

11.13 급식용기는 각각의 개, 고양이 또는 강아지에 제공되어야 한다. 12주내의 고양이는 그릇 하나에 3마리를 먹일 수 있다.

11.14 개는 자유로이 뛸 수 있는 곳에서 혹은 실용적인 경우 데리고 걸을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 하루 두 번, 10분씩 운동해야 한다.

11.15 개 혹은 고양이의 육종이 같은 농장에서 이루어질 시, 이 시리즈 “육종 개의 보호 및 관리, 육종 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의 동거동물 발행물에 기록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생성된 서류는 애완동물 가게에 진열되어서는 안된다.

9) 독일 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센터 규약

독일 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1995년 6월 17일)

- 이하 발췌 -

1995년 6월 17일 독일 동물보호연합 총회에서 독일 동물보호연합의 원칙적 입장으로서 개정된 동물보호센터규약이 결의되었다.

동물보호센터규약

II. 관할권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해 동물보호법 11 조 2 항 No. 3 과 이를 위해 제정된 행정규칙에 언급된 전제들이 성립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인력

동물보호단체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원장을 지명하며, 가능성과 필요에 따라 정규직 동물관리인을 채용하거나 혹은 명예직 동물관리인을 선임한다. 단체장은 마찬가지로 동물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원장 혹은 책임관리인은 §11 TSchG (동물보호법) 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인력에게는 특히 동물행동, 동물위생 등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2. 지시권한

동물보호센터 원장은 센터운영인력에 대해 동물들의 영양, 관리 & 숙박 문제 관련해서 지시권한을 갖는다. 전염병 발생 경우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지시 혹은 치료 중에 있는 동물 관련한 수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는다. 센터운영인력은 동물들의 영양, 관리 & 숙박과 관련되는 지시 그리

고 본 동물보호센터규약의 규정들을 제 3 자에 대해 관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동물들의 영양, 관리 & 숙박 관련해서 명예직 도우미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의 배치는 § 11 TSchG (동물보호법) 에 따른 책임자 혹은 책임자에 의해 위임을 받은 인명에 의해 조정된다.

III. 수용설비

일반적인 후생 및 행정시설 이외에 동물보호센터는 다음의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조류, 소형포유동물 & 기타 동물들을 위한 검역소
- 합당하게 설비된 병동
- 개, 고양이 그리고 기타 센터의 수용동물들을 위한 일반 숙소

그룹별 개의 사육은 개들의 본능적 습성으로 인해 개별 우리에서 사육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룹사육을 위해 공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들은 이러한 사육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 개, 고양이 그리고 기타 동물들을 위한 활동면적
- 퇴직동물들을 위한 시설 (가능하다면)

검역소와 병동은 공간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기타 시설물들과도 이격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 수용된 동물들을 위한 감염위험이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센터는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출입권한

검역소, 병동 그리고 퇴직동물시설의 내부공간들은 센터운영인력과 담당수의사에 의해서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센터장의 동의가 요구된다. 센터인력은 이때 특정 안전규정들을 엄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검역소와 병동의 출입 전과 후에는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위생 관련 최소 필요조건들을 엄수해야 한다.
일반 숙소의 내부공간들은 폐쇄되어 있어야 하며, 센터운영인력들의 동반을 통해서만 출입이 허용된다.

2. 자문과 감독

독일 동물보호연합 혹은 본 연합에 소속된 지방단체들에 의해 지명된 자문 수의사들은 정상 운영시간동안에 그리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방문해서 센터의 모든 수용설비를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물보호센터는 문제발생시 그리고 시설 개보수시 수의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공인된 자문 수의사들의 주소목록은 독일 동물보호연합에 의해 제작된다. 동물보호센터 규약에 따라 합당하게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들은 자문 수의사의 추천을 통해 “독일 동물보호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동물보호센터”라는 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IV. 동물관리

1. 영양과 관리

동물들의 영양과 관리는 전문가의 책임사항이다. 전문가와 상의 없이 그리고 센터운영인력을 통한 통제 없이는 어떠한 동물에게도 먹이나 음료가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기타 방식으로 동물들을 부양할 수 없다.
사료와 식수의 품질과 양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들은 책임 전문가에 의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의사와 상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기적인 수의사 고유의 관리조치들의 실행은 - 피부 및 모질관리 -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책임사항이다.
동물과 인간의 밀착된 접촉이 식사와 청소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동물들은 또한 상황이 허용된다면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합당한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다. 어린 동물과 행동장애 동물들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개들과 산책은 동물보호센터장 혹은 이를 위한 책임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아이들 혹은 18 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개와 산책을 위해 개를 인도해서는 안된다. 14 세 이하 아이들은 반드시 성인에 의해 동반되어야 한다.

2. 의료지원

새로이 수용된 동물들은 가능한 인도 받은 후 즉시 검역소에서 혹은 새로운

환경적응에 적합한 휴식공간에 체류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동물을 위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병원체의 대량분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동물들은 가능한 조속하게 건강진단을 위해 수의사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이 동물들은 소유자가 인수하러 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치해야 한다:

- 구충
- 외부기생동물 (이, 벼룩 등) 의 제거
- 동물들은 상태에 따라 모든 중요한 감염질환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자에 대한 양도 이전에 동물들은 동일성확인을 위한 표시가 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한다; 고양이들은 가능하다면 거세한 후 양도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가 재정적 근거로 상기 서술된 예방조치들을 실행할 수 없다면 취득자에게 양도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가능한 조속하게 실행하도록 의무를 가지게 한다.
의술조치들과 주사들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 수용된 질환을 가진 혹은 질환이 의심되는 동물들은 즉각적으로 수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이때 지금까지의 병력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다.
수의사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모든 수용 동물들에 대해 포괄적 검사를 실행하며, 이와 더불어 질환성 신체변화, 기생충 감염 그리고 동물행동이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는 단체장에게 영양, 관리 & 숙박에 있어서 요구되는 개선과 변경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종류와 품종, 성별과 특징 그리고 인도일자와 동물의 나이에 관한 데이터가 기재되는 문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행된 의료조치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중개 혹은 기타 동물의 현재 체류지에 관한 데이터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V.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수용

동물보호센터가 단지 한정된 수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발견동물 & 양도동물들은 어떤 경우든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수용상태에 다다르기 전에 동물들을 근접한 동물보호센터 혹은 기타 합당한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비상계

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1. 퇴직동물의 수용

퇴직동물은 발견동물과 양도동물을 위해 필요한 자리가 퇴직동물을 통해 제한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퇴직동물은 예방접종수첩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규정에 합당한 예방접종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한다. 고양이들은 고양이유행병 (범백혈구감소증) & 고양이감기 (유행성 기관지염) 그리고 개들은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H.c.c.), 렙토스피라증 & 파보바이러스에 대해 예방접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광견병 발생지역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권장하고 있다.

2. 야생동물의 수용

야생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본적으로 위급상황일 경우에만 수용될 수 있다. 동물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가능한 조속하게 방면하거나 혹은 토착동물이 아닐 경우에는 합당한 시설로 양도되어야 한다.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야생동물을 위해서 종에 합당한 그리고 행동에 적합한 사육조건을 동물보호센터는 조성해주어야 한다.

3. 야생고양이의 수용

야생고양이들이 인간들과 공동의 삶에 적응하는 것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거세 후 그리고 건강회복 후 다시 이전의 장소에 방면하거나 혹은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합당한 환경으로 방면한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애호가들을 통해 이러한 동물들의 보호가 보장되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요구되는 경우에 치안관청과 협의해서 결장한다.

VI. 동물들의 양도

동물보호단체는 법적으로 성년이 된 사람에게만 동물들을 양도한다.
동물보호센터 동물들은 모범양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양도된다. 고양이들은 가능하다면 거세한 후 양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자에게 동물들을 가능한 조속히 거세하겠다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삽입해서 의무화한다. 아이들에 대한 우호성, 무는 성질, 도망가려는 충동 등과 같은 알려진 특정성격들을 양도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한다.

VII. 안락사

1. 원칙

a) 근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어떤 동물도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b) 통증, 고통 혹은 손상을 가지고 삶을 지속해야 하는 치유 불가능한 동물들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의 당연한 계명이다. 고통 없는 안락사는 수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실행된다.

2. 예외

모든 다른 가능성들의 소진 이후에 그리고 동물보호법 규정에 상응해서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들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a) 심각한 치유할 수 없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동물들과 생존이 중대한 고통과 결부되어 있는 동물
b) 비정상적이고 치유할 수 없는 행동장애로 인해 자신 혹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시급한 위험을 가지는 동물

이러한 동물들에게서 인간 혹은 동족들과 공동의 삶에 적응시키려는 모든 행동치료조치들이 실패한다면 그리고 근접한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이러한 예외경우들에서 안락사에 대한 결정이 위원회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위원회는 단체장, 책임전문가 (예를 들어 동물보호센터장 그리고 관리요원) 그리고 2 명의 수의사 (이들 중에 1 명은 가능하다면 관청수의사이어야 한다) 에 의해 구성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모든 안락사 관련해서 이전에 실행된 행동치료법적인 조치, 이유 그리고 실행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최소 2 년간 보관해야 한다.

10) 히다카시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본)

히다카시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평성 14년 4월 1일 시행)

- 이하 발췌 -

(정의)

제 2 조 이 조례에 있어서 「애완동물 묘원」이란 개, 고양이 그 외에 사육되고 있었던 동물의 시체의 화장에 필요로 하는 소각로의 설비를 가진 시설, 당해 시체를 매장하거나 또는 소골을 납골하기 위한 설비를 가진 시설 및 이러한 설비를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설치의 허가)

제 3 조 시내에 애완동물 묘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허가의 신청)

제 4 조 1. 전조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애완동물 묘원의 명칭
(3)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의 장소
(4) 애완동물 묘원의 설비의 처리 능력
(5) 애완동물 묘원의 설비의 위치, 구조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애완동물 묘원의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

2 전항의 신청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가의 기준)

제 5 조 시장은 제 3조의 허가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그 신청과 관련되는 애완동물 묘원의 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언급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동조의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1) 공원, 학교, 보육원, 병원 그 외의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 및 실제로

사람이 거주 하는 건조물(이하「주거」라고 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애완동물 묘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의 경계까지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 단, 주거에 있어서는 세대의 대표자(또는 동등한 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렇치 아니하다.

(2)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에 관계되는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

(3) 애완동물 묘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배수가 좋은 토지 그 외의 공중위생상 지장이 없는 토지인 것.

(4) 애완동물 묘원의 경계에는 장벽 또는 밀식 한 나무 울타리 등이 설치 될 수 있는 것.

(5) 애완동물 묘원의 출입구에는 문이 설치되는 것.

(6) 애완동물 묘원 내에는 빗물 또는 오수가 정류하지 않도록 적당한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

(7) 소각로의 설치에는 방취, 방진 및 방음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

(8) 앞 각 호에 정하는 것 외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에 필요한 관계 법령과의 조정이 도모되어 있는 것.

(허가의 조건)

제 6 조 시장은 제 3조의 허가를 할 때에 즈음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완료계 등)

제 7 조 1. 제 3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에 관계되는 공사가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당해신고에 관계되는 애완동물 묘원이 제 5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기준으로 적합한지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의 허가)

제 8 조 1. 제 3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해 허가에 관계되는 제 4조 제 1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 언급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당해 허가와 관련되는 동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언급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전 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지 관리)

제 9 조 제3조 또는 제8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당해 허가에 관련되는 제4조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한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당해 계획에 대해서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변경 후의 것)에 따라 유지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위의 승계)

제 10 조 1.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애완동물 묘원을 물려받은 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지 및 폐지의 신고)

제 11 조 허가를 받은 자는 애완동물 묘원의 설치에 관계되는 공사를 중지했을 때 또는 애완동물 묘원을 폐지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제 12 조 1.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페트영원의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그 직원에게 애완동물 묘원에 출입하여 설비,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선권고)

제 13 조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기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건을 위반하고 있을 때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명령)

제 14 조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기한을 정해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

제 15 조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3조 또는 제8조 제1항의 허가를 취득했을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 금지명령)

제 16 조 시장은 제3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 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애완동물 묘원의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공표)

제 17 조 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11) 동경도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경도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성 18년 3월 9일 개정공포)

제 1장 총칙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도민의 동물 애호정신의 고양을 기하기 위하고 동물에 의한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한층 사람과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동사회의 실현을 충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의 책무)

제 2 조 도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쇼화48년 법률 제105호. 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법 제6조에 정한 대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협력하여 실시하는데 노력한다.

(구시정촌의 협력)

제 3 조 지사는 법 또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특별구 또는 시정촌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도민의 책무)

제 4 조 도민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동물의 애호에 노력함과 동시에 도가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육주의 책무)

제 5 조 사육주(동물의 소유자이외의 자가 사육 또는 보관할 경우는 그 자를 포함. 이하 동일)는 동물의 본능, 습성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생명이 있는 동물의 사육주로서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사육주는 주변 환경을 배려하고 근린주민의 이해를 얻는데 마음을 다

해 사람과 동물과의 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이 함부로 번식해서 적정한 사양의 기회를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번식을 방지하기위해 불임수술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그 평생에 걸쳐 사육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육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육주가 되려고 하는 자의 책무)

제 6 조 사육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동물의 본능, 습성 등을 이해하고 사육의 목적, 환경 등에 적합한 동물을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2 장 동물의 적정한 사육 등

(동물사양의 준수사항)

제 7 조 사육주는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 또는 보관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1. 적절한 사료와 물을 급여할 것
2. 인수공통감염증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며, 감염의 예방에 주의를 다 할 것.
3. 동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적절한 사양 또는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오물 또는 오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시설의 내외를 항상 청결히 할 것.
6.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토지, 건물을 불결하게 하거나 손상시키지 말 것.
7. 소음(짖음), 체취, 깃털 등에 의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할 것.
8. 탈주한 경우는 본인이 포획하고, 수용할 것.

(고양이의 사육자의 준수사항)

제 8 조 고양이의 소유자는 법제37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열거된 것 외에

고양이를 놓아기를 경우에는 함부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의 소유자의 준수사항)

제 9 조 개의 사육자는 다음 열거한 사항을 준수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개주 탈주하지 못하게 묶어놓든지, 우리 또는 울타리 속에 가두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 곳에 놓으며, 고정된 망이나 쇠로 확실히 묶어서 사육 또는 보관할 것. 그러나 다음 이부터 니 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경찰견, 맹도견 등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 될 경우
   ②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침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개를 훈련 할 경우
   ③ 개를 통제 할 수 있는 자가 개를 망, 쇠사슬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이동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는 경우.
   ④ 그밖에 탈주, 인명, 신체, 재산의 침해가 없는 경우로 동경도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함) 으로 정한 경우.
2) 견의 종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시킬 것.
3) 견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킬 것.
4) 견의 사육 또는 보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식을 시설 등이 있는 토지, 건물의 출입구 부근의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을 것.

(특정동물 등의 사육자의 준수 사항)

제 10 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쇼화50년 정령 제107호) 별표에 규정한 동물(이하 특정동물 이라 함)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견 또는 사람에게 감염 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병원체에 감염된 동물 (이하 특정동물등 이라 함)의 사육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특정동물 등의 행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시설 등을 점검할 것.
2) 지진, 화재 등의 비상재해시에 있어 특정동물 등이 탈주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둘 것.

(적정사양 강습회 등)

제 11 조 지사는 도민의 동물 애호 및 적절한 사육 등의 추진을 위해 강습

회를 개최,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동물애호추진원)

제 12 조 지사는 동물의 애호 및 적절한 사육 등의 추진에 대해 열의와 식견을 가진 도민 중에서 법 제38조 제1항의 동물애호추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동물애호추진원은 법 제38조 제2항에 열거된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한 활동을 한다.

1) 사육주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바램에 따라, 사육 등의 목적, 환경 등에 적합한 동물의 선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할 것.

2) 사육주의 요구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할 것.

3) 전 2호에 열거한 것 외에 규칙에 정한 것.

제 3 장 동물취급업의 규칙

(동물 취급업의 등록)

제 13 조 법 제10조 제1항의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 제22조 제1항의 동물취급책임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동물취급책임자연수를 수료한 증명서류, 그 외 타 규칙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 지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취급업자의 책무)

제 14 조 법 제10조 제1항의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취급업자 라고 함)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평성18년 환경성령 제1호. 이하 법시행규칙 이라함) 제8조에 규정된 것 외 영업을 영위하는 중에 있어 그 상대방인 구입자, 차수인, 사육주등에 대해 당해 동물의 적절한 사육 또는 보관의 방법에 대해 이해되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취급책임자의 역할분담)

제 15 조 동물취급책임자는 당해 동물취급업에 있어서 이 조례 또는 법의 규정에 기하여 명령 또는 처분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 또는 시설의 관리하는 자를 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동물취급책임자는 동물 또는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불비 또는 부적사항을 발견한 경우는 동물취급업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추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취급책임자의 동물 또는 시설의 관리에 대한 추언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취급책임자연수)

제 16 조 지사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물취급업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 또는 능력을 부여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취급책임자 연수를 실시한다.

2. 지사는 전항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연수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장 특정동물의 사양 또는 보관

(특정동물의 사양또는 보관의 허가)

제 17 조 법 제26조의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전에 법시행규칙 제15조의 신청서에 규칙에 정한 시설의 기준에 충족하다는 서류를 첨부, 특정동물의 종류별로 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2.법시행규칙 제14조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의 허가)

제 18 조 법 제28조의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전에 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신청서에 규칙에 정한 시설의 기준에 충족하다는 서류를 첨부, 특정동물의 종류별로 지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의 요건)

제 19 조 지사는 제17조 또는 전조의 허가의 신청이 법 제27조제1항 각호 또는 규칙으로 정한 이외 다음 각호에 열거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당해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1) 신청자가 다음 이 또는 로에 열거한 것중 해당되지 않을 것.
   ① 성년피후견인
   ② 여행, 장기간부재 등에 의해 특정동물을 적정하게 사육,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2) 스스로 사육 또는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전호 ① 또는 ②에 열거한 사항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육 또는 보관하여야 할

것.

(허가의 취소)

제 20 조 지사는 특정동물을 사육 또는 보관할 자가 법 제29조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전조에 규정한 허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는 당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동물의 인수, 수용 등

(개, 고양이의 인수)

제 21 조 지사는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를 그 소유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유자가 계속하여 사육할 수가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인수 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개 또는 고양이를 인수할 때는 일시, 장소 그 외 인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지사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개 또는 고양이를 인수시 그 습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개 또는 고양이를 인수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일 경우는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개의 수용)

제 22 조 지사는 사육주가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주한 개가 있을 때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개를 수용할 수 있다.

2. 직원은 수용하려고 하는 개가 그 사육주 또는 다른 자의 토지, 건물, 선박 또는 차량내에 있는 경우에 있어 그것을 수용하는데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합리적인 필요라고 판단되는 정도에 한하여 그 장소(사람의 주거를 제외)에 들어갈 수 있다.

(부상당한 개, 고양이 등의 수용 등)

제 23 조 지사는 도로, 공원, 광장 그 외 공공의 장소에 있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개, 고양이 그 외 타 규정에 정해진 동물(이하 개, 고양이 등 이라 함)을 발견한 자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 고양이 등을 수용할 때는 치료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공시 등)

제 24 조 지사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을 인수 또는 수요한 때는 당해 동물의 종류, 수용 등의 일시, 장소 그 외 필요한 사항을 2일간 공시 하도록 한다.

2. 지사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한 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는 그 소유자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해 개를 인수하지 않은 때는 그 것을 처분할 수 있다.

(양도)

제 25 조 지사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 수용한 개, 고양이 등을 그 사육을 희망한 자로서,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양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를 원하는 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들개의 구제)

제 26 조 지사는 들개(사육주가 없는 개를 말함, 이하 동일)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의 방법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을 경우라 인정될 때는 일정한 구역 또는 기간을 정해, 약물 등을 사용하여 그 것을 구제할 수 있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들개를 구제하려고 할 때는 당해구역 또는 그 부근의 주민에 대해 사전에 그 취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인수공통감염증의 조사 등)

제 27 조 지사는 인수공통감염증의 관해 조사 또는 연구를 행함과 동시에 그 방역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제 6장 긴급시의 조치 등

(긴급시의 조치)

제 28 조 사육주는 그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특정동물 등이 탈주한 경우는 즉시 지사 또는 경찰관에 그 사항을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특정동물 등을 포획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통지가 있을 경우 또는 사육주가 즉시 판명되지 않은

특정동물 등이 탈주한 경우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긴박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동물 등을 포획하거나 살처분시킬 수가 있다.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 29 조 사육주는 그 사육 또는 보관하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새로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사고 또는 그 후의 조치에 대하여 사고발생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사에게 제출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개의 사육주는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사고발생시부터 24간 이내에, 그 개의 광견병 유무를 수의사에게 검진 받아야 한다.

(조치명령)

제 30 조 지사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또는 침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는 당해 동물의 사육주에 대해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 할 것.
2) 동물을 시설 내에 사양 또는 보관할 것.
3) 동물에게 목걸이를 채우게 할 것.
4) 동물을 살처분할 것.
5) 전 각호에 열거한 것 외에 필요한 조치.

(보고또는 검사등)

제 31 조 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 사육주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구하며 그 직원에게 시설 그 외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에 관계있는 장소(사람의 주거를 제외)에 출입, 시설 그 외 물건을 검사, 조사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의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장 잡칙

(동물감시원)

제 32 조 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 수용, 법 제2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조사 그 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한 감시

또는 지도를 수행하기위해 동물감시원을 둔다.

2. 동물감시원은 직원중에서 수의사 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충당 한다.

3. 전항에 결정된 것 외에 동물감시원의 자격 그 외 동물감시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4. 동물감시원은 제1항에 규정한 개의 수용 또는 출입검사, 조사를 행할 경우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애호관리심의회)

제 33 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자문에 조사 또는 심의를 하게하기 위해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동경도동물애호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

2. 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3. 전항의 위원은 학식경험을 지닌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지사가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재임을 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규정한 것 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수료 등)

제 34 조 다음 각호의 한곳에 해당한 자는 당해 각호에 정해진 액수의 범위내에서 규칙에 정해진 액수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신청하는 자
   동물취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 신청하는 동물취급업의 종별수가 하나인 경우 15000엔
   (2) 신청하는 동물취급업의 종별수가 둘 이상인 경우 15000엔을 초과한 동물취급업의 종별수에 따라 10000엔을 더한 금액을 가산한 액수.

2)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변경을 신청한 자
   동물취급업 등록 갱신신청 수수료
   (1) 신청한 동물취급업의 종별수가 하나인 경우 15000엔
   (2) 신청한 동물취급업의 종별수가 둘 이상인 경우 15000엔에 하나를

초과한 동물취급업의 종별 수에 10000엔을 더한 금액을 가산한 액수.

3) 법시행규칙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한 자
동물취급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 한건에 2800엔

4)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취급책임자 연수를 수강하는 자
동물취급업 책임자 연수수수료 2500엔

5) 법제2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신청하는 자
특정동물사육 또는 보관 허가신청수수료 한건에 51000엔

6) 법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규정에 의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특정동물사육 또는 보관변경 허가신청수수료 한건에 51000엔

7) 법시행규칙제15조제6항의규정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특정동물사육 또는 보관허가증 재교부신청수수료 한건에 2800엔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인수를 요청한자
인수수수료 한 마리 또는 한두에 5800엔

2.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가 인수 또는 수용한 동물의 반환을 원하는 사육주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따라 당해동물의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질 때는, 규칙에 정한 것이라도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전항의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임)

제 35 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벌칙)

제 36 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명받은 동조제4호의 조치를 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7 조 제31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2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8 조 다음 각호에 해당 한 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개를 수의사의 검진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명받은 동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제 39 조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를 사육한 자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양벌규정)

제 40 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부록 3. 관련 단체 의견서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관리방안 연구” 에 대한 5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서

이번에 (재) 대한산업경제연구소가 농림부가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반려동물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최초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이며, 또 향후 진행될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참고가 될 중요한 기초적 연구로 그 의의가 매우 큰 연구로 생각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내에서 여러번 제기된 민원사항(동물보호시설, 동물감독관의 동물호호조치) 내지 쟁점사항(동물등록제도, 동물장묘업, 동물보호감독관)인데도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며 이를 평가하여, 제도적 선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의 민원사항의 경우, 이런 민원사항을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유기동물과 미아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등록제의 수수료나 수익의 일부가 동물보호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반려동물 등록대행이나 총체적인 관리가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관할관청이 직접 대행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정책저인 의사결정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등록대행 수익이 유기동물보호소의 설치 및 유기동물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동물보호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등록제를 시행하는 본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약보고서는 그 19면에 자치단체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등록증 등 제작을 하며, 민간단체와 판매업소가 대행서비스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록업무와 전체적인 관장업무를 어떤 주체가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이 사례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런 등록업무가 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일본의 사례라도 조사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총체적인 관리에 관한한, 이런 등록업무가 동물의 복지와 생명존중이라는 공익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이권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연구가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할 시에는 반려동물을 책임있게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반려동물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등록제와 반려동물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반려동물관리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정책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1] 최소한도의 동물에 대한 책임성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등록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등록방법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웃 대만 등에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I 동물판매업

동물의 사육 및 번식, 교배 등에 관한 반려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내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판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동물판매업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를 어렵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동물번식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을 따로 떼어낸 법령으로 만든다는 것은 동물판매업 등록제의 취지와 이유가 상거래질서회복을 위함이 아니라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동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동물판매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등록제를 하면서 반려동물판매업의 등록제의 실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I. 유기동을보호시설의 설치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이 연구가 여러 가지 설치기준, 설치면적, 인력기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십여년간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복지문제나 각종 비리등의 문제가 끊임없는 민원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기동물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팔아치우는 범죄행위조차 발생하고 언론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시설이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는 시설기준이 아니라,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

1) 이를테면 Rollin, Bernard and Michael Rolllin, "Dogmatism and Catechisms: Ethics and companion animals" In Anthrozoos, vol.14, no1. pp.4-11의 자료에서 반려동물정책의 방법에서 등록제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런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위탁보호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경쟁 입찰이 아닌 동물보호 자격으로 하여, 보호소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지, 보호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시설이 되어있는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보호소에서 동물방치 및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동물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람의 복지시설도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되어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동물의 보호시설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탁, 직영보호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소의 문제점을 감시 및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위탁, 직영 유기동물보호소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동물보호법내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보호감독관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물보호감독관의 업무가 많고, 그 인력이 감당하기 어렵고, 설사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학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의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방문하여도 어린이에 대한 학대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비추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의 자격과 감독방법을 정하고 이런 보호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감시하여 이런 보호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고, 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보호시설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IV. 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동물보호법이나 가칭 “반려동물의 관리법”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법은 그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대만,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동물장례업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 이 동물장묘업을 어떤 법

에서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동물단체의 해외조사의 경우, 해외전문가들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적 성격을 띤 반려동물관리법등에 포함하여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반려동물 소각로 처리용량기준을 최저 10Kg/시간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기준을 낮추면서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단체에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 특례조항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등에서의 소형소각로 사용 시 공해문제를 어떻게 억제하는지, 예외조항으로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장묘업 등 산업촉진을 위한 법률마련이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시설 등의 사체처리에 필요한 공영화장장의 설치의 필요성이라할 것입니다. 시위탁 유기동물의 사체처리는 폐기물소각업체에 소각을 맡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하여 소각비용 현실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유기동물소각처리는 별도로 공공 소각처리시설에서 저렴하게 해주거나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V.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피학대동물을 상습적인 동물학대자로부터 임시 보호, 인도 조치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관의 권한은 동물보호감시관제도 도입의 핵심입니다. 피학대 동물을 인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누가 동물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피학대 동물의 인도, 보호조치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 법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에 근거 마련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VI.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두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이 처음 도입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여 감시관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경우처럼, 민간인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시관의 역할과 업무과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험과 의식이 투철한 명예감시관을 두어 동물보호감시관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은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야 명예감시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부에 속한 동물보호감독관의 경우에는 수의사나 다른 아무 공무원 등 아무나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되더라도 일정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독립적인 직무로서 규정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동물복지에 중요하다는 것이 이웃대만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단지 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만 등 이웃나라의 시행경험으로 보아서 어떤 제도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동물자유연대 http://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foranimal.or.kr/
생명체학대방지포험 http://www.voice4animals.org

2) Paul Littlefair. Taiwan's animal protection law: provisions and enforcement. WSPA 한국동물복지협회주최. 2005 반려동물복지국제 컨퍼런스. pp 65-71.